

연구보고 2006-57

이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전 경 근(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 공동연구자 : 이 은 정(경북대학교 법대 교수)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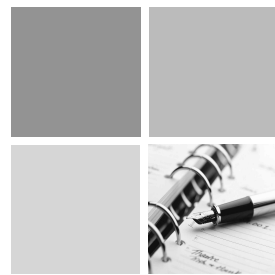
목 차

연구요약	1
제 1 장 서 론	23
제 2 장 아동의 양육실태	27
I. 아동인구의 감소	29
II. 아동양육 실태	31
III. 아동학대 실태	38
IV. 아동권리 실태	41
V. 아동관련 정책	43
제 3 장 아동관련법의 현황 및 체계	47
I. 아동관련법 체계	49
II. 아동관련법 현황	52
1.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법률들	52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52
(2) 민법	54
(3) 아동복지법	56
(4) 청소년기본법	58
(5) 건강가정기본법	59
(6) 영유아보육법	60
(7) 그밖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현행법	61

2.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법률안	65
(1) 양육비의 확보를 위한 입법안	65
(2) 공적부조에 의한 아동양육	69
Ⅲ. 아동관련법의 문제점	75
1. 아동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75
2. 아동관련법 정비의 필요성	77
제 4 장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79
I. 부모에 의한 양육의 지원	81
1. 현행 법률에 나타난 아동양육에 관한 책임의 소재	81
2. 부모양육을 위한 국가의 지원	82
II. 부모양육을 대체하는 형태에 대한 지원	84
1. 입양	84
2. 가정위탁	87
(1) 가정위탁의 개념	87
(2) 가정위탁의 필요성	87
(3) 현행 가정위탁제도	87
(4) 현행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93
3. 아동보호시설	93
Ⅲ. 아동수당	94
1. 아동수당의 의의	94
2.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94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	95
4. 아동수당의 고려요소	95
제5장 아동학대와 국가의 개입	99
I. 아동학대의 개념과 사례유형	101

II. 외국의 입법례	104
1. 일본	104
2. 프랑스	107
3. 영국	111
III. 아동학대에 관한 현행법 검토	115
1. 학대아동의 발견	115
2. 국가의 개입	117
3. 아동의 권리성	125
4. 전달체계	127
5. 재정	129
제 6 장 아동양육기본법에 포함될 내용	131
1. 기본적인 내용	133
2. 임신·출산에 관한 규정	134
3. 생활안정을 위한 규정	134
4. 교육에 관한 규정	135
5. 장애인에 관한 규정	136
제 7 장 결 론	137
<참 고 문 헌>	155
<부록>	
일본 아동수당법 번역문	161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아동관련법률안	175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제 1 장

- 미래의 주인공이어야 할 아동들이 부모 일방의 사망이나 이혼 또는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이혼의 경우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말미암은 한부모가정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부모의 책임은 혼인 중인 때에는 물론 이혼한 경우에도 존속함. 나아가 부모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그렇지만 직접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한 경우 및 부모의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일방에 의하여 양육되는 경우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친지나 사회단체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됨
- 부모에 의한 아동의 양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후견적인 양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아동의 양육 이외에 아동학대 등 아동의 복지를 위협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아동복지는 아동양육과 함께 아동에 대한 입법의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의 양육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아동의 복지 특히 아동학대에 관하여서도 살펴보기로 함

제2장 아동의 양육실태

- 아동양육실태는 아동에 관한 법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실태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간단히 정리함

I. 아동인구의 감소

- 1960년대에 이르러 최고에 달하였던 아동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함. 특히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아동의 감소는 노령화라는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됨

II. 아동양육 실태

- 아동의 양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영유아의 양육은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데, 출산연령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영유아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는 연령별 이용시설의 유형에 관한 자료에 잘 나타나 있음.

- 만0-5세 영유아기에는 “특별히 다니는 곳 없음”이 가장 많고(41.2%),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의 종류는 어린이집·놀이방·선교원(23.7%)과 유치원(19.1%)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만6세 이상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원이용이 월등하게 높으며(73.8%), 다음으로 “특별히 다니는 곳 없음”이 18.5%로 훨씬 낮게 나타남

- 아이가 어릴수록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적게 나타나고, 가족내

양육경향이 높은 반면, 아이연령이 높아질수록 역시 학원이용 비율이 높아짐

- 특히 영유아의 양육이 개별가족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현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한 측면과, 반대로 취업여성에게는 양육이 취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아동연령별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비교해 보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만0-2세 영아기에는 무응답이 약90%로 나와서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만3-5세의 경우 20-40시간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만6-8세의 경우 10-20시간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동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 이용시간이 줄어들고 있음

- 그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아동돌봄에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은 영유아 20.0만원, 초등학생 20.6만원, 전체로 보면 20.3만원이 소요됨.

- 보육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말에는 1,919개 보육시설에서 4만8천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으나, 2004년 6월말 현재에는 25,319개 보육시설에서 898,533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는다고 함.

- 가구소득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시설과 동거조부모의 이용비가 각각 34.7%, 18.1%로 높아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함

- 모의 취업 여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에 관한 조사에서는 영유아의 경우 취업모의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하여 보육시설, 선교원, 일반학원, 혈연, 비혈연 이용률이 높고,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은 별 차이가 없으며 학습지를 이용한 교육은 모가 미취업인 아동의 이용률이 더 높다고 함.

- 그밖에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당 266,870원을 사용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가구당 지출하는 아동 보육·교육비용은 정비례한다고 하며, 가구당 총 보육·교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10.8%에 달하며, 아동 1인당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7,600원이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학아동은 월 176,400원이

라고 함

- 보육과 관련된 통계 외에 자녀양육비에 한 통계를 살펴보면,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자녀양육비(95년 기준)는 한 자녀는 월 53만원(가계소득의 37%), 두 자녀는 75만원(46%), 세 자녀는 93만원(56%)이라고 하며, 그리고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총양육비는 한 자녀 1억 2,300원, 두 자녀는 1억 8,100원, 세 자녀는 2억 1,600만원이라고 함

- 아동양육실태를 종합하면,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가 직장생활을 포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면 부모의 경제적 활동이나 또는 영아기에 있는 둘째의 양육을 위하여 첫째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나 또는 또래와의 교류를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됨

-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영유아기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을 지원해 줄 보육기관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Ⅲ. 아동학대 실태

- 아동학대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유기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하여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초등학교 교학년에 해당하는 9세에서 11세에 이르는 아동이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12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아동임. 그렇지만 2004년 이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에서 8세에 이르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12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아동에 대한 것보다 늘어남 점이 특이함

- 아동학대에 관한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보호자인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짐. 특히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 아동이기 때문에 학대의 결과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박탈된 것이므로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회적 관심의 영역이 되어야 하며,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임

IV. 아동권리 실태

- 현행법상 아동은 보호의 대상일뿐 스스로 권리를 가지는 주체가 아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아동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 UN에 의해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으로 191개국이 비준하고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했으며 매 5년마다 보고서를 UN에 제출하고 있는데 1994년에 첫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0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의 동거권, 양육받을 권리, 지도·감독을 받을 권리, 국가의 양육지원 의무 명시,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권, 문제 부모와의 분리권 등 12개 조항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제2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우선 제1차 보고서(1996)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동의 부모면접권 보장, 해외입양의 제한, 항고권 보장, 체벌금지, 장애아동·혼외출생아동·이주노동자자녀·탈북아동 등 소수자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생활보장을 위한 법률제정 등 제1차 권고에 대한 이행을 재촉 구함

V. 아동관련 정책

- 아동양육실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의 추진방향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정책 목표로 삼고, 아동이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함

- 2004년 여성백서에 나타난 주요 보육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보육료 지원예산은 2004년 현재 274천명 1,524억원에 이르며,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004년에는 전국에 48개소에 대하여 신축비를 지원하였고 2005년부터는 매년 400개소씩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함

- 또한 영아전담시설 신축을 위하여 2004년도에 15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아 보육수요에 따른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2004년에 24개소에 대하여 신축비를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역내 보육정보와 육아지식 등을 제공, 상담을 통한 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996년부터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

- 여성가족부가 2005년도 육아관련정책 추진과제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0세아 가정 내 육아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 산전후휴가에 대한 기업주 부담을 1개월로 감소하고, 국가부담을 2개월로 확대하였으며, 2004년도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으로 하였으며, 유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월 10~15만원에서 월 20~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대체인력 확보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부분근무공무원제, 업무대행공무원제, 대체인력뱅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함

- 또한 0-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계층의 가구(전체가구의 약 70%)까지 육아비용 지원을 점차로 확대할 계획이며,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확대하고, 취업모의 직장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충하며, 아동의 요구에 따른 특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한편 6-8세아의 방과 후 교육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보육을 실시하기로 함

- 그리고 육아지원 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및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및 보육개발원 합동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육아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제3장 아동관련법의 현황 및 체계

I. 아동관련법 체계

- 아동관련법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법은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이며, 이들 4개의 법은 대상의 규정이 다르며, 관장하는 기관이나 전달체계가 달라 중복적인 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II. 아동관련법 현황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89년 11월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되고 1990년 1월 26일부터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으며, 1991년 12월 20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

- 본조약에서는 20세기 인권존중의 법이념에 부응하는 아동 고유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향유할 일반적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가정에 있어서 아동의 행복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아동이 당면한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짐

- 아동의 권리조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3부로 구성되며, 제1부는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족환경과 그에 대치되는 양육, 기초조건과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실체규정(제1조~41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2부는 비준후의 체약국과 유엔과의 관계규정인 이행규정(제42조~제45조)으로서 조약의 국제적 감독기관인 아동권리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는 서명, 비준, 가입, 효력발생 등 마무리 규정임(제46조~제54조).

-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양육에 관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도에 대한 존중 의무(제5조),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제7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원조

(제18조), 부모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제19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이 대체적인 친자관계의 설정을 요구할 권리(제20조), 입양(제21조), 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생존·발달에 필요한 생활의 조건과 수준을 확보할 권리(제27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8조)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① 면접교섭권 조항(협약 제9조 제3항), ② 입양허가제도 조항(협약 제21조 가항), 그리고 ③ 상소권보장 조항(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5))에 대하여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고 함

- 민법은 부부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의 반영으로 민법의 자녀 양육에 관한 규정은 매우 간단함

- 다만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경우와 재판상 이혼을 나누어 이혼 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부모는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시에는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하여 이혼시의 친권자지정에 관한 규정을 둬. 또한 친권의 행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도 둬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되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친권규정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친권상실을 신고할 정도의 친권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이 없는 경우에 친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과 친권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복지의 대상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육성과 관련하여 가정의 책임, 사회의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취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그 가정의 구성원인 아동의 양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혼과 관련하여 아동의 복지가 문제되는 경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에 힘을 쏟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저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시책과 모자의 보건을 증진하는 시책 및 자녀의 출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모·부자복지법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며, 부모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급여와 복지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모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입양한 장애아동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하도록 규정함

-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률이 있으며, 그밖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과 같이 아동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규정한 법률과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있음
- 법무부 민법개정안에서는 이혼시의 자녀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여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한편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836조의2 제4항에서는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양육비용의 집행의 확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에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재산분할·부양료 및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녀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사용자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자녀나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양육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양육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김재경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률안으로서 부모의 양육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양육비의 청구를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제5조)

• 특히 양육비의 결정, 양육비 결정을 위한 재산의 조회 등 법무부민법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양육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부모가 양육비를 지출한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부조에 의한 보조가 필요하게 됨.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수 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률의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나 아동방임에 대한 보호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아동안전특별법안은 아동 안전과 관련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점과 현행 아동안전과 관련된 법률이 아동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비아동인지적 범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한국의 아동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안됨

• 아동복지법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 및 사회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개정하려고 함

Ⅲ. 아동관련법의 문제점

- 현행법상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마다 달라서 각각의 경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로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의를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양육 내지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거나 또는 법률의 일부로서 아동의 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의 법체계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동이 존재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민법 또는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을 중심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제4장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I. 부모에 의한 양육의 지원

- 현행 법률에서는 아동양육에 관한 책임을 1차적으로 부모에게 지우고 있으며, 2차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취지는 타당하지만 부모의 아동양육에 관한 책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동의 양육이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양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유아기의 보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면이 강하여 여성의 사회진출 등 파생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보육교사 등에 대한 자격을 강화함
- 또한 영아·장애아 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유아의 발달 등에 관한 기록을 남기게 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II. 부모양육을 대체하는 형태에 대한 지원

- 부모에 의한 자녀의 양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를 다른 가정에 입양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입양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양제도인 친양자입양제도를 마련함

- 친양자입양제도에서는 양자를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며, 법원에 의한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도모함

- 또한 국내에서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국외입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입양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함

- 입양과는 달리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를 담당하는 가정위탁의 경우도 최근에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

- 가정위탁은 일반가정위탁과 대리양육가정위탁 및 친인척가정위탁이 있으며 대리양육이 가장 활발함

- 가정위탁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에 관한 단행법률을 만들려는 노력도 있음

- 가정위탁 절차는 위탁아동의 경우는 신청상담→위탁아동보호결정→위탁가정 선정→관계형성 및 친해지기 프로그램→가정위탁→사례관리→친가정복귀, 위탁가정의 경우 가족의 동의→위탁부모 신청→가정방문→관계형성 및 친해지기 프로그램→가정위탁→사례관리→아동귀가로 이루어짐

-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위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가정위탁 양육자의 법적 지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호시설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및 요보호아동이 아닌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며 아동복지법상 입소절차를 적용

- 아동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아동수당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자산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급부하고 가족의 생활 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

• 아동수당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1926년 뉴질랜드이며, 이후 유럽 각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제정·시행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다른 유럽 국가들, 남미, 아프리카의 신흥독립국에서도 이 제도가 보급·전개됨. 2005년 현재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아동수당제도를 실시

•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의 배분, 급여의 내용, 급여전달체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제 5 장

I. 아동학개의 개념과 사례유형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우리의 경우, 아동에게 비록 신체적 위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의 의도가 훈육에 있었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아동학대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도 아울러 둘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는데, 부모가 가지는 친권을 남용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함
- 아동에 대한 방임 이외에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유기 등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II. 외국의 입법례

- 일본의 경우 2000. 5. 24.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이외에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과 필요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하여 면회나 통신을 제한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학대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구분한 후 이들에 대하여 그에 맞는 보호를 제공함. 그리고 전달체계는 행정조직과 가정아동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정에 대한 부담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에 대한 복지의 제공이 아동의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는 2002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친권의 부분적 박탈 및 정지제도를 도입함
- 프랑스민법 제9편에서는 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장 자녀의 인격에 대한 친권(제371조 - 제381조), 제2장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민법 제382조 - 제387조)으로 나누어져 있음
-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며,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그렇지만 부모에 의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사법관의

관결에 의하여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친권을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도록 함

- 친권이 해제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또는 정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교육 상황이 심각하게 위태로운 때에는, 부모 쌍방 또는 일방, 아이를 맡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후견인, 미성년자 자신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교육구조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교육구조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제도는 아동이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친권을 제한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임. 다만 친권이 제한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영국의 아동법은 1989년에 제정되어 1991년 10월 14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아동의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옴. 1989년 아동법의 제정은 종전의 법을 합리화시키고 단순화시킬 필요에 의하여서도 촉진됨

- 1989년 아동법은 사법과 공법분야의 양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의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가정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불개입의 원칙 등이 그에 해당함. 다만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음

- 1989년 아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parental rights and duties)의 개념을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 개념으로 변화시킨 것이며, 이러한 부모의 책임은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되나, 아동이 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발전되면 그 정도에 따라 조정됨

- 첫째 아동의 욕구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둘째 부모와 협력하여야 하고, 셋째 인종·문화·종교·언어와 같이 아동이 경험한 영역과 연결되어야 하며, 넷째 가족을 원조할 경우에는 각 가족과 협조하여야 하고, 다섯째 서비스는 각 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기초로 하며, 아동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정부가 개입함

Ⅲ. 아동학대에 관한 현행법 검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4시간 긴급전화 1391이 설치되어 있음. 또한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됨
- 아동학대에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하게 되며,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됨
- 부모에 의한 아동의 양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아동이 속한 가정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나타남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아동에 대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부모로부터의 아동의 격리의 최후의 조치로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친권을 박탈하기 위한 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함. 또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지는 않지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아동은 보호의 대상일 뿐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됨. 그렇지만 아동의 복리가 친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그 관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가의 적극

적인 개입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는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전달체계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며, 하위기관이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급여와 다른 사회급여간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복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말단기관이나 담당자들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동에 대한 조치를 강제되어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아동의 보호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 6 장

-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임. 다만 입법의 형식을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기본법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절차적인 규정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또는 가사소송법에 특례를 두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동에 대한 양육의무는 1차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짐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필요함
- 그렇지만 출산과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가 마련할 필요가 있음으며, 또한 부모의 자력이 부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후원

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부모가 당연히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국가도 태아에 대한 검진 등을 통하여 임신을 장려하고 임신중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 후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보육과 관련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육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모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특히 생활안정을 위한 규정에서는 연령에 따른 보호도 필요할 것이지만 아동의 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하나의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부모의 이혼인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가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를 강제하는 방법과 그에 관한 사정기준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에 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아의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나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교육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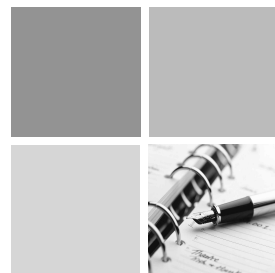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사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 및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 7 장

-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문화관광부에서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개별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내용의 중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을 정리·종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그밖에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통합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끝으로 아동이 가정내에서 양육되는 경우 모뿐만 아니라 부모 아동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과과쿼터제) 등 부모 등 가족이 모두 아동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미래의 주인공이어야 할 아동들이 부모 일방의 사망이나 이혼 또는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혼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2003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던 이혼율이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혼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한부모가정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¹⁾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부모의 책임은 혼인 중인 때에는 물론 이혼한 경우에도 존속한다. 나아가 부모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혼인 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아동양육을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한 경우 및 부모의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일방에 의하여 양육되는 경우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친지나 사회단체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를 종합하면 자녀의 양육이 문제되는 가장 중심적인 상황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부모의 혼인 중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폭력이나 방치 등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데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의 혼인 중에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절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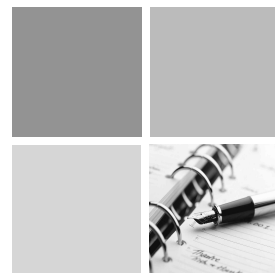
1) 통계청이 발표한 이혼가구수에 대한 추계에 따르면 2005년에는 이혼가구수가 805,011 가구에 불과하지만 2010년에 이르러서는 1,005,480 가구, 2020년에 이르러서는 1,241,488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출산 또는 입양에 의하여 자녀를 갖게 된 경우 부모에 의한 자녀의 양육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자녀의 양육을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이어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아동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졌지만, 아동의 양육에 관하여는 아직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²⁾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아동의 양육실태와 아동의 복지 및 양육에 관한 법규정을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미래세대의 육성이라는 당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기로 한다.

2)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안에서의 이혼시 아동양육과 관련된 부분이 아동의 양육에 관한 최근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장 아동의 양육실태



제 2 장 아동의 양육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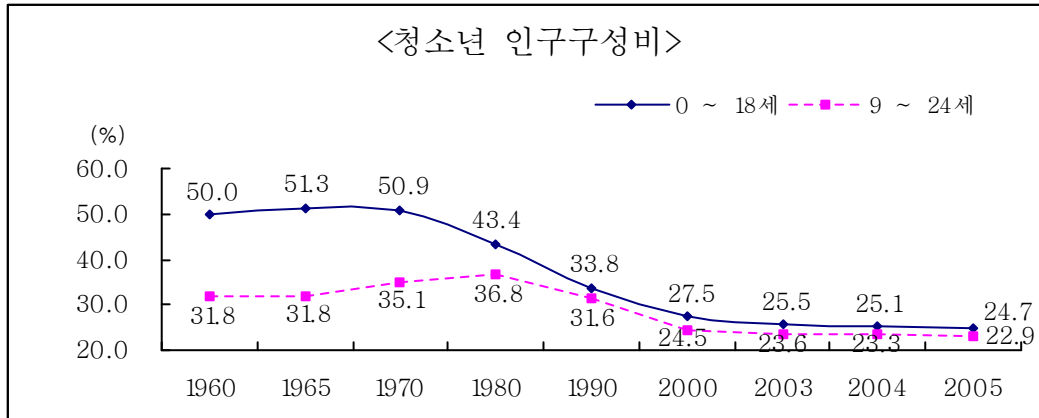
아동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양육되고 있는가는 아동양육에 관한 법을 입안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아동양육에 관한 실태를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문헌자료를 통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I. 아동인구의 감소

1960년대에 이르러 최고에 달하였던 아동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³⁾ 이러한 현상 가운데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아동의 감소가 노령화라는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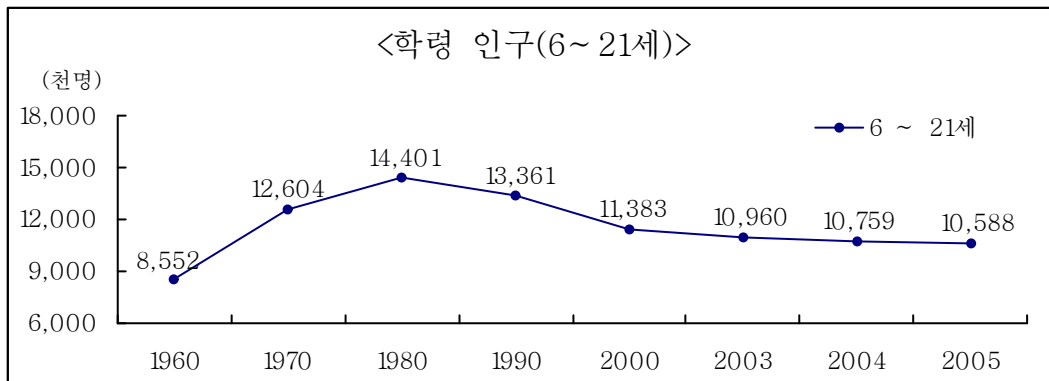
아동의 감소현상을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 1일 현재 아동에 해당하는 0~18세의 인구는 11,984천명이라고 하며, 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인구는 11,101천명으로 총인구의 24.7%, 22.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2004년과 비교할 때 아동인구는 1.0%, 청소년인구는 1.3% 낮아진 것이다. 그 결과 1960년 이후 0~18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인구구성비는 1965년 51.3%를 정점으로 하여 1980년 43.4%, 1990년 33.8%, 2000년 27.5%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3) 동아일보 11월 21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오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30년에는 4863만5000명, 2050년에는 4234만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 : 통계청, 「2001년 장래인구추계」

한편 2005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라 할 수 있는 6~21세 인구는 10,588천명이며, 연령대별로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6~11세 인구가 4,034천명, 중학교에 해당하는 12~14세 인구가 2,078천명,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5~17세 인구는 1,855천명, 대학교에 재학하는 연령인 18~21세의 인구는 2,622천명이라고 한다. 이는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의 14,401천명에 비해 26.5%(3,813천명) 감소한 것이며, 2004년에 비해서도 1.6%(171천명)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감소로 인하여 최근 들어 인구의 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저출산대책은 결국 출산의 장려와 함께 아동의 보육에 대한 대책이며, 본 연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된다.

II. 아동양육 실태

아동의 양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영유아의 양육은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데, 출산연령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 및 출산과 더불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출산 후 자녀를 둔 여성들이 취업이나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에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육아문제라고 한다.⁴⁾ 따라서 영유아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 문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영유아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는 연령별 이용시설의 유형에 관한 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05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선 만0-2세 영아기에는 “특별히 다니는 곳 없음”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88.9%), 만3-5세 유아기에서는 어린이집·놀이방·선교원(30.7%), 유치원(27.8%), “특별히 다니는 곳 없음”(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만0-5세 영유아기에는 “특별히 다니는 곳 없음”이 가장 많고(41.2%),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의 종류는 어린이집·놀이방·선교원(23.7%)과 유치원(19.1%)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6세 이상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원이용이 월등하게 높으며(73.8%), 다음으로 “특별히 다니는 곳 없음”이 18.5%로 훨씬 낮게 나타난다. 즉 아이가 어릴수록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적게 나타나고, 가족내 양육경향이 높은 반면, 아이연령이 높아질수록 역시 학원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은 저학년, 고학년 큰 차이없이 학원이용이 현격하게 높게 나타났다.⁵⁾

특히 영유아의 양육이 개별가족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현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한 측면과, 반대로 취업여성에게는 양육이 취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한다.⁶⁾ 현재 초미의 관

4) 통계청 2003년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의 39%가 이에 해당한다..

5) 아동양육실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05년 가족실태조사, 275면 이하 참고.

6)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도 전국 결혼·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취업 중이던 여성이 결혼을 전후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6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사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 내지 초고령사회로의 이전과 변화 속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고용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대응책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여전히 양육이 여성의 경력단절의 요인이 된다면 그 결과는 사회적인 비용을 크게 지불하게 될 것이며,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학원이용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육을 교육으로만 대체하게 되는 위험과 이로 인하여 다면적인 보육서비스를 발달시키지 못하게 될 위험성, 그리고 개별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⁷⁾

아동연령별 이용시설

구 분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학원	방과후 보육시설	특별히 다니는 곳 없음	기타	응답자녀수
영유아							
0~2세	1(0.3)	25(8.7)	1(0.3)	3(1.0)	257(88.9)	2(0.7)	289(100.0)
3~5세	174(27.8)	192(30.7)	121(19.3)	8(1.3)	120(19.2)	11(1.8)	626(100.0)
계	175(19.1)	217(23.7)	122(13.3)	11(1.2)	377(41.2)	13(1.4)	915(100.0)
초등학생							
6~8세	3(2.5)	1(0.8)	87(71.9)	4(3.3)	20(16.5)	6(5.0)	121(100.0)
9~11세	1(0.2)	2(0.4)	347(74.3)	11(2.4)	89(19.1)	17(3.6)	467(100.0)
계	4(0.7)	3(0.5)	434(73.8)	15(2.6)	109(18.5)	23(3.9)	588(100.0)
전 체	179(11.9)	220(14.6)	556(37.0)	26(1.7)	486(32.3)	36(2.4)	1,503(100.0)

위의 경우와 관점을 달리하여 아동연령별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비교해 보면, 일주일 기준을 기준으로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만0-2세 영아기에는 무응답이 약90%로 나와서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만3-5세의 경우 20-40시간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만6-8세의 경우 10-20시간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동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 이용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⁸⁾

7) 아동양육을 위한 시설이용을 가구소득과 부모의 취업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취업한 경우와 가계소득이 많은 경우에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여성가족부, 2005 가족실태조사, 280면 이하 참고.

8) 2005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이용시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동의 연령,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동연령별 시설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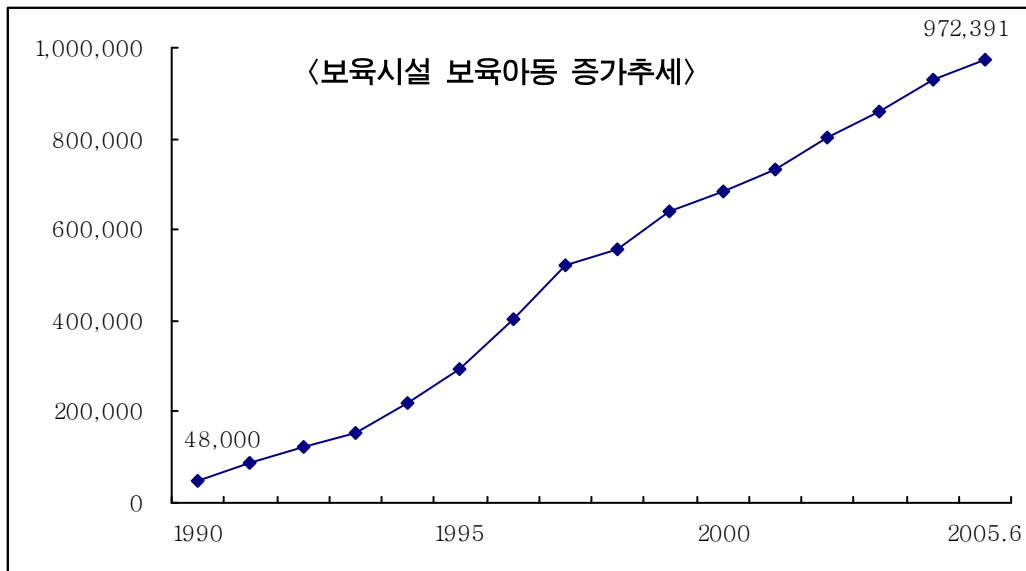
구분	10시간미만	10~20시간	20~40시간	40~50시간	50시간이상	무응답 /결측값	전체
영유아							
0~2세	6(1.9)	2(0.7)	10(3.3)	12(3.9)	2(0.7)	276(89.6)	308(100.0)
3~5세	44(8.8)	11(2.2)	254(50.8)	70(14.0)	21(4.2)	100(20.0)	500(100.0)
계	50(6.2)	13(1.6)	264(32.7)	82(10.1)	23(2.8)	374(46.3)	808(100.0)
초등학생							
6~8세	70(34.5)	72(35.5)	22(10.8)	2(1.0)	0(0.0)	37(18.2)	203(100.0)
9~11세	154(33.0)	173(37.1)	36(7.7)	4(0.9)	1(0.2)	98(21.0)	466(100.0)
계	224(33.5)	245(36.6)	58(8.7)	6(0.9)	1(0.1)	135(20.2)	669(100.0)
전체	274(18.6)	258(17.5)	322(21.8)	88(6.0)	24(1.6)	509(34.5)	1477(100.0)

그밖에 아동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동돌봄 관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시설이용을 하지 않고 가족내외에서 비공식적으로 돌보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평균 비용이 영유아 20.0만원, 초등학생 20.6만원, 전체로 보면 20.3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⁹⁾

한편 보육시설의 현황에 관한 다른 자료에 따르면 1990년 말에는 1,919개 보육시설에서 4만8천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으나, 2004년 6월말 현재에는 25,319개 보육시설에서 898,533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는다고 하며, 이것은 1990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보육시설은 1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1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된다. 그리고 2004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대상 연령 아동(6세 미만 아동)은 약 350만명이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영아(0~2세)의 14.4%와 유아(3~5세)의 33.7%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¹⁰⁾

9) 가족 내에서 양육하는 비용에 관한 통계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가족이 사용하는 비용 가운데 자녀를 위한 비용에 관하여는 통계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적절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005년 여성가족부 보고서 123면 참고.

10) 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도 아동복지시설일람표를 참고.



다른 연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에 있어서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27.9%, 유치원 16.5%, 선교원 1.9%, 반일제 이상 학원 8.2%, 일반학원 8.7%를 이용한다고 하며, 가족에 의하여 보육되는 경우에 혈연은 동거조부모 9.9%, 비동거조부모 9.1%, 비혈연은 1.7%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을 위하여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28.0%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유아의 경우 기관 이용률이 보육시설 38.9%, 유치원 27.2%, 선교원 2.9%, 반일제 이상 학원 13.4%, 일반학원 14.3%이고, 혈연에 의하여 보육되는 경우 동거조부모 10.6%, 비동거조부모 7.5%, 비혈연은 1.1%이라고 한다. 특히 40% 이상이 학습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학원을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원 이용률이 72.8%이고, 학습지 47.0%,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이용은 24.5%이며, 혈연에 의한 돌봄은 동거조부모 7.8%, 비동거 조부모 3.3%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구소득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시설과 동거조부모의 이용비가 각각 34.7%, 18.1%로 높아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반일제 이상 학원과 동거조부모는 중간계층의 이용률이 높고, 비동거 조부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율이 비례하

는 경향이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는 일반학원 이용률이 소득수준과 정비례하고 공부방은 반비례한다고 한다.

모의 취업 여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에 관한 조사에서는 영유아의 경우 취업 모의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하여 보육시설, 선교원, 일반학원, 혈연, 비혈연 이용률이 높고,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은 별 차이가 없으며 학습지를 이용한 교육은 모가 미취업인 아동의 이용률이 더 높다고 한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취업모 자녀의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개인교육은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미취업모의 경우가 높다고 한다.

그밖에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당 266,870원을 사용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가구당 지출하는 아동 보육·교육비용은 정비례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구당 총 보육·교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10.8%에 달하며, 아동 1인당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7,600원이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학아동은 월 176,400원이라고 한다. 두 경우 모두 표준편차가 커서 아동간 개인별 격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아동양육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영유아는 67.0%가 비용을 지불하고 33.0%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며,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은 아동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¹¹⁾

위에서 살펴본 보육과 관련된 통계 외에 자녀양육비에 한 통계를 살펴보면, 1997년 한국소비자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자녀양육비(95년 기준)는 한 자녀는 월 53만원(가계소득의 37%), 두 자녀는 75만원(46%), 세 자녀는 93만원(56%)이라고 하며, 그리고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총양육비는 한 자녀 1억 2,300원, 두 자녀는 1억 8,100원, 세 자녀는 2억 1,600만원이라고 한다.¹²⁾ 이와 다른 한 연구에서는 자녀양육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구재소비를 제외한 8대 비목의 지출액을 측정하였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계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99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출항목을 식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등 9가지 소비

11) 0세아 중에서는 15.6%만이 비용을 지불하지만, 만5세가 되면 97.1%가 비용을 지불하고, 초등학생은 89.7%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

12) 허경옥,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추정, 10면. 구체적인 자녀양육비 지출액과 소득에 대한 제출비율에 관하여는 아래의 <표7> 참고.

지출항목으로 분류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는데, 양육을 위한 한달 평균 총지출액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¹³⁾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적정양육비로 약 70%의 조사대상자가 초등학교 재학생은 30만원 이상, 중·고등학생은 50만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월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액 및 소득 중 지출비율

자녀수	고소득가계		저소득가계		전체
	취업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한자녀가계 한자녀	62(23)	59(31)	50(44)	42(50)	53(37)
두자녀가계 첫째	50(21)	46(22)	40(32)	34(29)	42(26)
둘째	37(15)	35(17)	31(25)	28(23)	33(20)
총 두자녀	87(36)	81(39)	71(57)	62(52)	75(46)
세자녀가계 첫째	47(19)	38(19)	32(26)	31(26)	37(23)
둘째	36(15)	34(16)	25(20)	26(22)	30(18)
셋째	35(15)	25(12)	22(17)	20(16)	26(15)
총 세자녀	118(49)	97(47)	79(63)	77(64)	93(56)

※ 단위 만원. 괄호안은 소득에 대한 비율(%)

※ 고소득가계는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상(고소득가계의 평균소득: 235만원), 저소득 가계는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저소득가계의 평균소득: 104만원)

13) 허경옥,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 3면에서 재인용. 김성희의 1995년 연구에서는 99만원의 화폐비용에 양육자의 시간비용을 합하여 양육을 위한 총비용을 179만 6천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여기서 나타난 양육자의 시간비용은 가사노동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 월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액 및 소득 중 지출비율

(단위: 만원)

자녀수	고소득가계		저소득가계		전체
	취업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한자녀가계					
1-7세	47	51	45	36	44.75
8-13세	53	58	54	42	51.50
14-19세	61	69	54	50	58.50
두자녀가계					
첫째 1-7세	52	46	41	26	41.25
8-13세	41	44	46	38	42.25
14-19세	57	49	33	41	45.00
둘째 1-7세	42	42	36	30	37.50
8-13세	38	40	34	29	35.25
14-19세	42	35	31	30	34.50
세자녀가계					
첫째 1-7세	41	49	32	32	38.50
8-13세	51	39	32	30	38.00
14-19세	54	27	33	32	36.50
둘째 1-7세	35	29	23	22	27.25
8-13세	38	32	23	33	31.50
14-19세	36	41	32	25	33.50
셋째 1-7세	26	27	20	17	23.25
8-13세	29	21	20	17	21.75
14-19세	51	25	18	26	30.00

위와 같은 아동양육실태를 종합하면,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가 직장생활을 포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면 부모의 경제적 활동이나 또는 영아기에 있는 둘째의 양육을 위하여 첫째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나 또는 또래와의 교류

를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¹⁴⁾을 고려한다면 영유아기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을 지원해 줄 보육기관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Ⅲ. 아동학대 실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접수된 아동학대사례현황은 다음과 같다.¹⁵⁾

아동학대 사례현황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	계
2000.10~12	603(35.9)	1,075(64.1)	1,678(100.0)
2001	2,606(63.1)	1,527(36.9)	4,133(100.0)
2002	2,946(71.7)	1,165(28.3)	4,111(100.0)
2003	3,536(71.0)	1,447(29.0)	4,983(100.0)
2004	4,880(69.7)	2,118(30.3)	6,998(100.0)
2005	5,761(72.0)	2,239(28.0)	8,000(100.0)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폭력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유기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14)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활동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15) 이하의 아동학대에 관한 통계자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아동학대 유형별 빈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입	유 기	계
2000 10~12	180(38.8)	30(6.5)	23(5.0)	205(44.2)	26(5.6)	464(100.0)
2001	1,015(35.6)	574(20.2)	140(4.9)	985(34.6)	134(4.7)	2,848(100.0)
2002	1,039(28.4)	961(26.3)	119(3.3)	1,329(36.3)	212(5.8)	3,660(100.0)
2003	1,315(30.4)	1,172(27.1)	203(4.7)	1,514(35.0)	126(2.9)	4,330(100.0)
2004	1,587(27.5)	1,680(29.1)	66(4.6)	2,071(35.9)	160(2.8)	5,764(100.0)
2005	1,728(25.9)	2,034(30.5)	305(4.6)	2,416(36.4)	176(2.6)	6,659(100.0)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하여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에 인용한 학대행위자 관련 현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													계
	가정 내	집근처 또는 길가	친척 집	이웃 집	놀이 방	어린 집	유치 원	학 교	학 원	별 원	복지 시설	파악 안됨	기타	
2000 10~12	382	-	7	6	-	-	-	17	-	-	-	-	52	464
2001	1686	43	31	31	-	-	49	38	-	16	-	211	2,105	
2002	1990	55	82	24	29	26	3	11	17	18	27	-	194	2,478
2003	2,369	110	114	37	14	32	3	15	9	23	48	0	147	2,921
2004	2,939	196	86	76	29	67	7	23	14	59	47	21	327	3,891
2005	3,589	253	84	55	19	65	6	44	24	51	97	19	327	4,633

학대행위자 관련현황

관 계		2000 10~12	2001	2002	2003	2004	2005
부 모	친부	409	1,174	1,432	1,607	2,111	2,254
	친모		502	551	651	856	1,098
	계부		36	21	22	41	38
	계모		113	94	138	145	142
	양부		8	5	6	9	15
	양모		7	0	10	5	15
친 조 부	5	46		24	26	34	36
친 조 모				53	63	70	78
외 조 부				0	7	7	7
외 조 모				5	12	23	20
친 인 척	12	51	54	93	100	114	
형 제 자 매	-	6	6	10	5	16	
부모의 동거인	-	14	37	34	76	79	
교 사	17	50	12	25	33	44	
학 원 강 사	-	-	13	12	21	24	
시 설 종 사 자	-	-	5	42	104	78	
이 옷	8	39	34	64	77	98	
낮 선 사 람	-	-	20	40	57	49	
파 악 안 됨	-	-	80	32	65	47	
기 타	13	57	32	27	52	81	
계		484	2,105	2,478	2,921	3,891	4,633

피해아동 관련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성별	남	1,033(49.1)	1,332(53.8)	1,461(50.0)	1,964(50.5)	2,353(50.8)
	여	1,067(50.7)	1,146(46.2)	1,460(50.0)	1,927(49.5)	2,280(49.2)
	파악안됨	5(0.2)	0	0	0	0
연령	0세	224	18	52	144	132
	1~2세		208	186	245	201
	3~5세	284	400	431	547	593
	6~8세	388	604	688	848	951
	9~11세	498	626	775	987	1,165
	12~14세	437	428	538	744	1,018
	15~17세	265	194	243	344	528
	18세	-	-	3	27	41
	파악안됨	9	0	5	5	4
계		2,105	2,478	2,921	3,891	4,633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초등학교 교학년에 해당하는 9세에서 11세에 이르는 아동이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12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아동이다. 그렇지만 2004년 이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에서 8세에 이르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12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아동에 대한 것보다 늘어난 점이 특이하다.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보호자인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가정사'로 숨겨지기 쉽다.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 아동이기 때문에 학대의 결과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박탈된 것이므로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회적 관심의 영역이 되어야 하며,¹⁶⁾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IV. 아동권리 실태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아동은 보호의 대상일뿐 스스로 권리를 가지는 주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다자간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아동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 UN에 의해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으로 191개국이 비준하고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했으며 매 5년마다 보고서를 UN에 제출하고 있는데 1994년에 첫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0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의 심사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는 부모와의 동거권, 양육받을 권리, 지도·감독을 받을 권리, 국가의 양육지원 의무 명시,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권, 문제 부모와의 분리권 등 12개 조항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원혜옥,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아세아여성법학 제5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2, 251-252면.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와 아동복지 현장

조 항	세부항목	현장실태	검 토
부모와의 동거권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가족과의 재결합권	이혼 등에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과 부모의 면접권, 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의 가족과의 재결합권	아동과 부모의 면접권 필요
부모의 양육 일차 책임 부여	부모의 양육 책임, 의무	부모의 책임 법적 명시, 아동 유기 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	이혼 시 부부의 공동친권 명시 필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권리	양육비 회수권	양육비 회수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미흡	양육비 회수체적이 명시될 필요
부모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을 권리	부모에게서 지도·감독을 받을 권리	부모의 지도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부모의 지도책임에 대한 법적 명시 필요
국가의 양육지원 의무 명시	국가의 양육지원 시설 설치 의무, 취업모의 양육지원 시설 설치 의무	국가의 이차 양육 책임 법적 명시, 보육시설 등 설치 의무 규정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음, 국가의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거나 있어도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님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권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	학교 시설 기관에서의 체벌 금지, 성학대의 경우 친고죄 적용으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체벌이 잔존해 있고 성학대 대상에도 친고죄가 적용되므로 성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움
문제 부모와의 분리권	아동학대·유기 부모와 분리권	부모 등에 의한 학대일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분리가 실제로 어려움	부모가 가학 대상일 때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의 마련 필요
박탈환경으로부터 보상권	빈곤에 대한 보상지원	빈곤층에 생활보조금 지급 필요, 빈곤지역에 아동 생활교육프로그램 지원 필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부지원이 시작되었음, 가족 단위 지원이며 아동 개인 지원이 아님. 빈곤지역에 보상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함.
입양 시 아동 이익 우선권	입양 여부, 입양 부모, 입양 시기에 대한 아동의 결정권	아동의 결정권 무시 경향, 친권 보장으로 공식적 입양이 어려움, 입양부모에 대한 사회지원	입양부모의 요구만 중시하는 경향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방지권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으로부터의 보호권리	아동 불법 해외이송과 미귀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	아동 불법 해외이송과 미귀환에 대한 법률 조항 필요
취업부모를 둔 아동의 양육보조	취업부모의 양육을 돕는 시설 설치 의무	보육시설 설치, 방과후 교실 설치	영유아보육법에 근거에 설치하고 있음
사회보장권	복지 수혜권,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의 착취로부터 보호	복지 수혜권,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의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명시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 복지가 부여되고 있지 않음

특히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제2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우선 제1차 보고서(1996)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동의 부모면접권 보장, 해외입양의 제한, 항고권 보장, 체벌금지, 장애아동·혼외출생아동·이주노동자자녀·탈북아동 등 소수자가정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생활보장을 위한 법률제정 등 제1차 권고에 대한 이행을 재촉하였다.¹⁷⁾ 그러한 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¹⁸⁾

V. 아동관련 정책

위에서 살펴본 아동양육실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의 추진방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권리신장을 정책 목표로 삼고, 아동이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2004년 여성백서에 나타난 주요 보육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보육료 지원예산은 1992년 34천명 126억원이었으나, 2004년 현재 274천명 1,524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0~4세 아동과 일부 방과 후 초등학생에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1999년부터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지원은 만5세 이하이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과 취학연령이 되었으나 질병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12세 이하의 아동¹⁹⁾ 및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의 경우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는 보육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공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국공립시설 신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4년에는 전국에 48개소에 대하여 신축비를 지원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매년 400개소씩 신축할

17)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68면.

18)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 가운데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7월에 입법예고된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 다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동의 경우에는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한다고 한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영아전담시설 신축을 위하여 2003년에 48개소, 2004년도에 15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 현재 영아전담시설은 929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한다. 또한 장애아 보육수요에 따른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2003년에 10개소를 신축하였고, 2004년에는 개소당 239백만원을 기준으로 24개소에 대하여 신축비를 지원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 장애아전담시설은 103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하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역내 보육정보와 육아지식 등을 제공, 상담을 통한 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996년부터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여성가족부가 2005년도 육아관련정책 추진과제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0세아 가정 내 육아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 산전후휴가에 대한 기업주 부담을 1개월로 감소하고, 국가부담을 2개월로 확대하였으며, 2004년도 육아휴직급여를 2003년에 비하여 10만원 증가한 40만원으로 하였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월 10~15만원에서 월 20~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대체인력 확보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부분근무공무원제, 업무대행공무원제, 대체인력뱅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²⁰⁾

또한 0-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을 강화하며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할 계획인데,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의 가구(전체가구의 약 70%)까지 육아비용 지원을 점차로 확대할 계획이며,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확대하고, 취업모의 직장 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충하며, 아동의 요구에 따른 특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6-8세아의 방과 후 교육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보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육아지원 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및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및 보육개발원 합동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육아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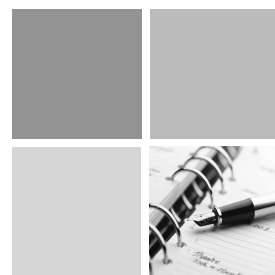
그밖에 저출산 관련정책으로서 출산축하금 지급, 주거지원 강화, 자녀교육비 및 양육지원, 출산 후 육아휴직, 보육시설이용 지원, 불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의 정책을 추진

20) 여성정책기본계획, 15면.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용품 지급, 보육료 지원, 임신부 영양제 제공, 출산정보센터 운영 등 추진 중이다. 나아가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 및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자보건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를 12세에서 18세의 아동으로 확대하며,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입원 진료 받을 때 기존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0%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²¹⁾ 또한 2006년부터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시술비 중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책 마련하고, 2006년에는 3만쌍의 불임부부를 지원한 뒤 매년 5만쌍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21) 아동에 대한 급여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2006. 2. 2. 대통령령 제19313호로 개정되었다.

제 3 장 아동관련법의 현황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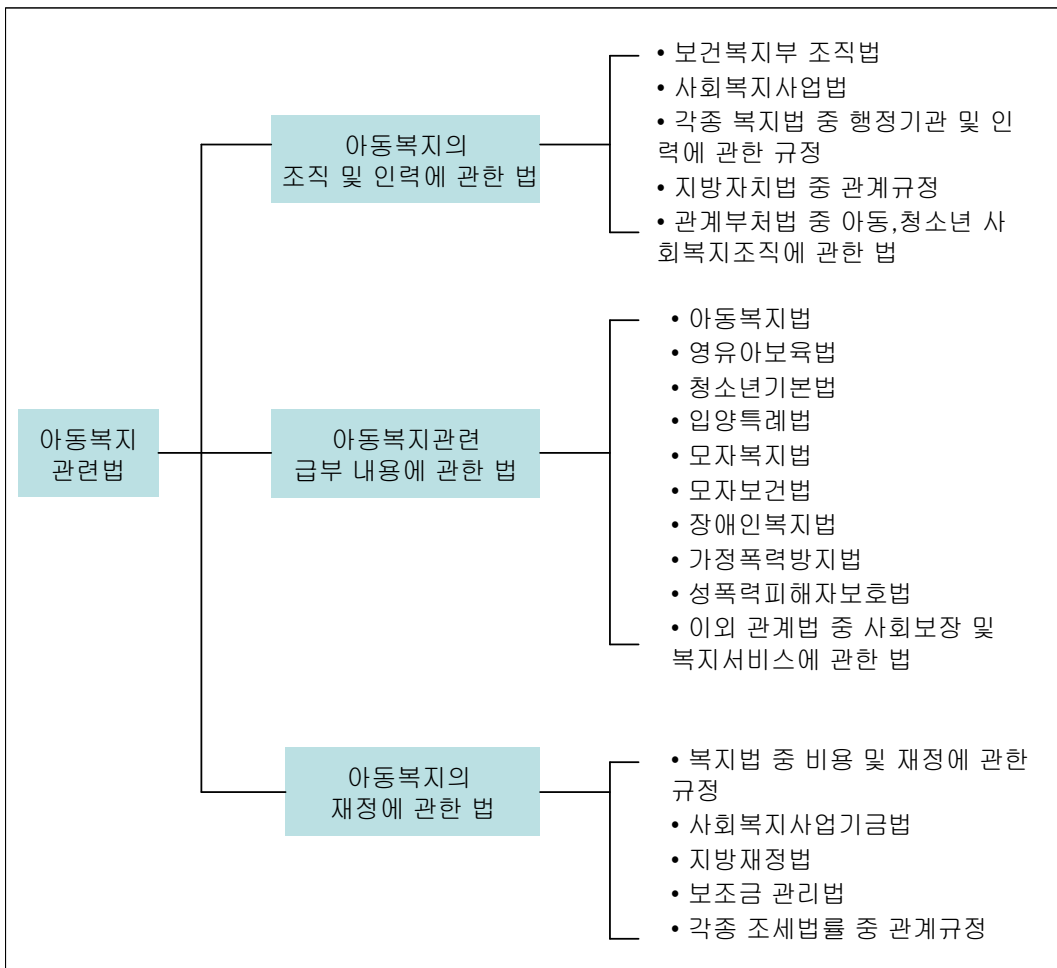


제 3 장 아동관련법의 현황 및 체계

I. 아동관련법 체계

아동복지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관련법의 현황 및 체계를 아동복지법 관련법의 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아동관련법의 현황 및 체계



이 가운데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법은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이라고 하며, 이들 4개의 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서는 대상의 규정이 각기 다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반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모두 ‘아동’이라고 한다. 즉, 9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은 청소년과 아동의 범주 모두에 해당되므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인력양성체계 및 전달체계도 모두 다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상 규정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된다는 것은 서로 중복될 수 있어 결국 국력 낭비의 요소가 된다고 본다.

아동관련 법 규정의 비교

비 교 항 목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대상의 규정 및 명시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제3조 1항)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제2조 1항)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제2조 1항) 방과후 보육대상의 경우 12세 미만의 아동에게까지 연장하여 적용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제2조 1항)
정책개발기구	국가청소년위원회(제9조, 제16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4조의2)	보육정책위원회(제6조)	유아교육위원회(제5조)
정책내용(기본이념 및 주된 사업)	청소년의 참여보장, 능동적 삶의 실현, 성장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제2조)	각종 학대, 방임, 매매 등 아동의 복지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권을 보장(제3조)	영유아의 보육(제3조)	유아의 교육
정책사업기관	1. 한국청소년진흥센터(제31조)	1. 아동보호전문기관(제24조) 2. 가정위탁지원센터(제28조의 2)	1. 보육정보센터(제7조) 2. 보육개발원(제8조 2항)	유아교육진흥원(제6조)
담당행정부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조정체계	1.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제10조) 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제11조)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4조 2항)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제6조)	1. 유아교육·보육위원회(제4조)
전달체계	1. 청소년육성전담기구(제26조 1,2항)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제31조)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 보육정보센터(제7조, 제8조 2항)	1. 유아교육진흥원(제6조)
인적체계	1. 청소년지도사(제21조) 2. 청소년상담사(제22조) 3.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25조) 4. 청소년지도위원(제27조)	1. 아동위원(제6조) 2. 아동복지지도원(제7조) 3.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 아동보호전문기관원	1.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제17, 18조) 2. 보육지도원	1. 교원(원장, 원감, 교사)(제22조)
인력양성체계와 법적 근거	국가청소년위원회(제21조, 22조)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에 위탁(제20조)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제21조)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제22조)

이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4개의 법률과 그밖에 아동의 양육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아동의 양육과 관련되어 문제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아동관련법 현황

1.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법률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²²⁾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89년 11월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되고 1990년 1월 26일부터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으며, 1991년 12월 20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²³⁾

본조약에서는 20세기 인권존중의 법이념에 부응하는 아동 고유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향유할 일반적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가정에 있어서 아동의 행복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²⁴⁾ 이 조약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제1차적 책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국가는 부모의 이러한 양육책임의 이행에 법적으로 원조한다는 것이다(제18조). 예컨대 체결국은 부모의 권리 및 의무를 고려하면서 자의 복지에 필요한 보호 및 케어(care)를 확보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사법상,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제2항).

둘째, 아동은 이제까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이제 어린이도 하나의 인간

22)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을 연구한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0호, 407면 이하에서는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 민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교육법, 소년법을 예로 들고 있으며, 그 밖에도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생활보호법(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유아교육진흥법(폐지, 현행 유아교육법), 모자복지법(현행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이 아동권리협약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23) 박재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교육관계법령의 충돌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1호, 대한교육법학회, 125면. 아동권리협약의 제정과정에 관하여는 한봉희, 아동의 권리조약과 가족법, 가족법연구 6호, 한국가족법학회, 33면 이하 참고.

24) 한봉희, 아동의 권리조약과 가족법, 가족법연구 6호, 한국가족법학회, 40-41면.

으로서 권리의 향유주체임과 동시에 권리행사주체로서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는 신시대의 새로운 권리상을 구현하였다는 점에 획기적 의미가 있다. 예컨대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제3조 제1항), 의견 표명권(제12조) 즉 자기결정권의 인정, 표현과 정보의 자유(제13조), 사회보장의 권리(제26조), 생활수준의 권리(제27조), 건강과 의료의 권리(제24조), 휴식·여가·문화적·예술적 생활에의 참가의 권리(제31조) 등 시민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셋째, 국제적으로 특히 제3세계에서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표시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차별금지, 자의 최선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아동의 의사존중),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족환경과 그에 대치되는 양육, 기초보건과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실체규정(제1조~41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2부는 비준후의 체약국과 유엔과의 관계규정인 이행규정(제42조~제45조)으로서 조약의 국제적 감독기관인 아동권리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는 서명, 비준, 가입, 효력발생 등 마무리 규정이다(제46조~제54조).²⁵⁾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도에 대한 존중 의무(제5조),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제7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원조(제18조), 부모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제19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이 대체적인 친자관계의 설정을 요구할 권리(제20조), 입양(제21조), 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생존·발달에 필요한 생활의 조건과 수준을 확보할 권리(제27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8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① 면접교섭권 조항(협약 제9조 제3항), ② 입양허가제도 조항(협약 제21조 가항), 그리고 ③ 상소권보장 조항(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5))에 대하여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고 한다.²⁶⁾ 이 가운데 입양허가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2005년 민법개정에서 친양자제도라는 형태로

25) 한봉희, 아동의 권리조약과 가족법, 가족법연구 6호, 한국가족법학회, 43면.

26)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1, 국제인권법학회, 204면 이하

도입되었고, 면접교섭권 조항은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 상소권 보장에 관하여는 입법적인 조치가 취하여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²⁷⁾

(2) 민법

민법은 부부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의 반영으로 민법의 자녀양육에 관한 규정은 매우 간단하다. 즉 혼인 중에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지위에서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지는데, 부모의 자녀양육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규정으로 제913조와 제974조를 드는 견해가 있는데, 제913조의 경우에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제974조에서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과 부양의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해석에 의하여 보충되어 부모는 자신에게 자녀를 부양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는데,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상황에 관한 후견적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이다.²⁸⁾

27)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관련에 관하여는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1, 국제인권법학회, 206면 이하 참고.

28) 이와 같은 이혼에 있어서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의하여 민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다른 측면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친권과 후견에 관한 규정이다. 이 가운데 친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나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09조). 한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친권의 행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친권의 일부를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²⁹⁾

한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된다(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순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9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며, 제932조에 해당하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그렇지만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후견인의 범위를 넘어 4촌 이내의 친족 그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민법 제940조).

이러한 친권규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정도의 친권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이 없는 경우에 친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³⁰⁾에서는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여 이를 행사할 자가 없게 된 때에는 심판의 확정시까지 그 친권을 행사할 자를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³¹⁾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방편이며 자

29) 친권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일부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며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일부상실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925조).

30) 제62조 (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1) 가사소송규칙 102조 (대행자의 지정) ①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여 이를 행사할 자가 없게 된 때에는, 심판의 확정시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자를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권한대행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

녀의 보호도 그만큼 불완전하므로 소송기간을 가급적 단축하여 자녀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³²⁾ 한편 현행 민법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민법 제 777조에서 규정한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친족에 의한 친권상실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게도 친권상실 선고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³³⁾

위와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살펴볼 외국의 입법과 비교할 때 매우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부모보다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부모에 의한 양육이 항상 최선의 것이 아니라면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제2조에서 그 기본이념으로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아동의 복지에 관한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가정에서의 양육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가정내에서의 양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상실선고를 통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였

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2)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의 고찰, 가족법연구 제10호, 422면. 영국의 The Children Act 에서는 일반원칙으로서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법원은 소송지연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33)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10호, 418면

다.³⁴⁾

이러한 규정들은 아동의 복지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 전체를 개괄하여도 선언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³⁵⁾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며, 이를 다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기타 일반가정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제2조). 그렇지만 제정 당시에 두었던 임산부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다.³⁶⁾ 한편 요보호아동의 분류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령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중증장애아동, 비행아동, 성매매청소년)이 있다고 한다.³⁷⁾

아동복지법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등 일정한 자에 대한 신고의무의 부여(제26조)함과 동시에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제29조)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아동복지법에는 발견된 미아나 기아에 대한 신고의무나 신고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개정 된 후 보호조치나 아동학대 신고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신속하게 아동학대 현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⁸⁾

그렇지만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문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아동으로부터 청취하는 의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아동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 상담·치료 등의 급여나 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³⁹⁾

34) 그렇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경우에 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35) 아동복지법시행령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복지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주로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6) 이해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87면. 현행법 가운데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모자보건법이 있다.

37) 이해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87면. 다만 청소년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212호로 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8) 그렇지만 아직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개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39) 청소년의 성매매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끝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이 채택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아직도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을 급여를 받는 피동적 주체가 아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육성과 관련하여 가정의 책임, 사회의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6조에서는 가정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청소년기본법 제6조 제1항),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로 하여금 보호의무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4항).⁴⁰⁾ 나아가 제7조에서는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였다.⁴¹⁾ 또한 청소년기본법과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취지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이 법은 여성부가 주관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지 법무부가 주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0) 제6조는 2005. 12. 29.에 전문개정되었는데, 종전에는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재 1항에 해당하는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다.

41)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12. 29.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구성된 기관이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고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⁴²⁾ 그렇지만 청소년기본법의 주된 내용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5) 건강가정기본법⁴³⁾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과 가정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에 관하여도 정의하고 있다(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⁴⁴⁾ 또한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하며,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한다.⁴⁵⁾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제7조에서 가족가치라는 제목하에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

42)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 2. 9. 법률 제7163호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된 바 있다.

43)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하여 현재 4건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가족지원기본법안 및 평등가족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 의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다.

44) 가족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해서 호적을 기준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었는데, 2005. 3. 31.의 개정민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45) 건강가정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하지만, 대체적으로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한부모가정이나 그밖의 가정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법 개정안에서는 법률명을 가족정책기본법 등으로 법률명칭을 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정내에서의 자녀양육이 가족구성원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정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부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에 관하여 규정한 제15조 제2항 제6호와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에 관한 제21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과 안정된 주거생활에 관한 제21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의 양육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한 제2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이혼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31조에서는 단계를 나누어 이혼전 상담에 대한 지원,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에 대한 준비, 이혼 후 자녀양육비의 집행 등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⁴⁶⁾ 그밖에 지역단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보육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이념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육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46)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과 관련된 내용은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혼절차 및 이혼 후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규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⁴⁷⁾

특히 최근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에 힘을 쏟고 있는데,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모에게 지워진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덜어줌으로써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7) 그밖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현행법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저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시책과 모자의 보건을 증진하는 시책 및 자녀의 출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8조에서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는 모자보건법의 내용과 중복되며, 후자는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중복된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역시 상당부분 모자보건법의 내용과 중복되며, 건강가정지원법의 내용과도 일부 중복된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지만,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⁴⁸⁾

47)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48) 법이 시행된 후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7호)만 제정된 상태이며,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2)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며(제3조), 부모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급여와 복지자금을 대어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이다(제12조 및 제13조). 한편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모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⁴⁹⁾ 또한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그밖에 모자자립시설과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제19조).

3)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제44조 및 제45조), 같은 취지의 규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하며,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4)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5. 2. 9.부터 시행되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복지기본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협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하여 교육하며, 그밖에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실행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반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된 내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각종 할인조치, 청소년증의 발급, 체력검사와 건강검진 등

49) 이러한 취지의 아동양육에 관한 입법례로는 미국의 개인책임 및 근로조정기회조정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는 아동의 양육비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모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 실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청소년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지원청소년의 기준은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5) 보건의료기본법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과 모성에 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⁰⁾ 그밖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사회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입양에 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⁵¹⁾ 입양은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이며, 최근의 민법개정에서는 종전의 입양제도 외에 양자는 친자와 같은 지위에 두기 위한 친양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민법 제908조의2 이하). 그렇지만 친양자제도 역시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에 기초를 둔 제도로서 사회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3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후, 2차적으로 국가로 하여금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다른 가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이나 의료비와 그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50)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모자보건법의 내용과 일부 중복된다.

51) 민법은 입양을 양부모와 양자의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였다.⁵²⁾ 또한 입양기관에 대하여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 품 이외의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법률

먼저 교육기본법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의 실시하며(제8조),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그리고 최근에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며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 1년간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⁵³⁾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대상인 자녀가 취학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였다.

8) 그밖의 법률들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그밖의 법률들로서는 우선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입양에 있어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자를 정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은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입양 등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에서는 자녀를 임신, 출산 또는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산모와 영유아의 보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규정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아동이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

52)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53)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제24조),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의 대상은 유아의 보호자이다.

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법률안

최근에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하에서는 아동 양육에 관한 법률안을 이혼시의 자녀양육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민법개정안과 아동에 대한 학대방지 등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아동복지법 내지 그와 관련된 개정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육비의 확보를 위한 입법안

1) 민법 및 가사소송법개정안

법무부 민법개정안⁵⁴⁾에서는 이혼시의 자녀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837조),⁵⁵⁾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제843조). 그렇지만 협의상 이혼의 경우 현재의 이혼절차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부의 협의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개정안에서는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하여 1개월 내지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

54) 법무부 민법개정안은 2006. 11. 7. 국회에 제출되었고, 11. 9.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55)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었는데, 2005년의 개정에서는 직권으로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및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의 협의하여야 한다(개정안 제837조 제2항).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제3항). 그리고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4항). 그리고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⁵⁶⁾

한편 이러한 민법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836조의2 제4항에서는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법개정안 제63조의2). 그리고 양육비용의 집행의 확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에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재산분할·부양료 및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8조의3).

그리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녀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사용자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자녀나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

56) 개정안에서는 자녀와 검사로 하여금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가정법원의 개입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스스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자녀가 스스로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63조의2 제1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급여공제를 통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63조의2에서 규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63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양육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양육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⁷⁾

2)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김재경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률안으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부부재산제에 관한 개정안과 함께 준비한 것이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데,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 중 양육비의 대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개정안 중 양육비에 관한 부분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우선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부모의 양육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양육비의 청구를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가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에 필요한 수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생활수준 및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며(제6조), 양육

57)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에 관하여는 법무부 민법공청회 자료집 참고. 다만 일부 규정은 공청회 이후에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

비지급의무자의 양육비지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명의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제7조), 양육비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양육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다(제8조).

또한 양육비의 지급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나 기타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9조 제1항),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육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가사심판, 조정, 집행증서, 법률구조법인이 작성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간의 합의서 등에 의하여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다(제11조 제1항).⁵⁸⁾ 그밖에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 이하). 양육비의 지급대상은 부 또는 모의 일방과 동거하는 15세 미만의 자녀이며, 지급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지급된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반환할 책임을 지며, 법무부장관은 대지급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⁹⁾

위에서 살펴본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은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한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절차로서 양육비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양육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8) 담보제공은 금전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 이외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법원은 양육비의 지급을 위하여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에 비하여 다액인 경우에는 경매의 결과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59) 다만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개정안 제17조 단서). 그렇지만 부모가 1차적인 양육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공적부조에 의한 아동양육

자녀의 양육에 관한 민법규정은 자녀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모에 의한 자녀의 양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 의하여 부조가 필요하게 된다. 아동의 양육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을 시간적으로 나열해 보면,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⁶⁰⁾ 6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⁶¹⁾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⁶²⁾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기본법⁶³⁾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한부모가정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모·부자복지법⁶⁴⁾ 등과 같은 법률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사항들을 보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다.

1)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⁶⁵⁾

이 법률안은 저출산 시대의 도래 및 주 5일 수업제 실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과 후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첫째 방과 후 부모의 맞벌이나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비행이나 범죄에서 보호하고, 둘째 결식 및 학습부진 등을 방지하며, 셋째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넷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활동 격차를 보전함으로써 사회통합

60) 모자보건법은 1973. 2. 8. 법률 제2514호로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5. 12. 7. 법률 7703호로 개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

61) 영유아보육법은 1991. 1. 14.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고, 2005. 12. 29. 법률 7785호로 개정되었으며, 주관부서는 여성가족부이다.

62) 아동복지법은 1961. 12. 30. 법률 912호로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6. 9. 27. 법률 제8006호로 개정되었다. 최근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인종차별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피해 등으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유치원·학원·교습소의 운영자·교직원·종사자 등과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하였다.

63) 청소년기본법은 1991. 12. 31.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5. 12. 29. 법률 7799호로 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다.

64) 모자복지법은 1989. 4. 1. 법률 제4121호로 제정되었고, 2002. 12. 18. 법률 6801호로 모·부자복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5. 3. 24. 법률 7413호로 개정되었다.

65) 이 법률안은 2006. 3. 6. 김현미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을 실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국가적 책무로 판단하고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 후 학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방과 후 활동”,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이유에서 제안되었다.⁶⁶⁾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정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다. 지방의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1조).
- 라. 국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14조, 제15조).
- 마.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에 이 법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시설을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시설로 활용함(안 제17조).
- 바. 각 시설의 장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함(안 제18조).

66)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중앙 및 지방 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400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모두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있음(안 제20조).⁶⁷⁾

2)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안⁶⁸⁾

이 법률안은 2000년 1월에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는 경우에 보호시설에의 수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나 아동방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아동방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⁹⁾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아동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외상의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신체학대 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보호자가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5조).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학교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67)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법안의 적용범위(안 제3조), 학령기 아동·청소년보호와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지역 학령기 아동·청소년보호 및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 정보센터의 설치(안 제13조), 보호 및 교육지원 활용시설(안 제17조, 제20조)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지역위원회의 경우 다른 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이 우려되며, 정보센터의 경우에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68) 이 법률안은 2005. 7. 4. 박순자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69) 이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가비용으로 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확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바. 피해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학대 및 방임한 보호자에 대하여 피해아동과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6조).
- 아.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
- 자. 국가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의 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 긴급전화의 운영 등을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⁷⁰⁾

3) 아동안전특별법안⁷¹⁾

이 법률안은 최근 아동의 안전사고가 급증, 많은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아동 안전과 관련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점과 현행 아동안전과 관련된 법률이 아동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비아동인 지적 법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동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없는 현실에서 이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안전 담당부서가 총괄시스템 구성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은 법과 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이후 국

70)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만 분리한 것으로, 아동복지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보았다.

71) 이 법률안은 2005. 6. 21. 민병두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가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은 아동이며,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아동 안전' 문제가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의 아동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률안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⁷²⁾

가. 국무총리 산하의 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선진국 수준의 아동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동안전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다. 아동안전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기금 설치 및 재원을 확보함(안 제18조 및 제19조).⁷³⁾

4) 아동복지법개정안⁷⁴⁾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건수가 줄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현행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일부를 구체화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한다.

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함(안 제23조).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2)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아

72) 이 법안에서는 총 소요예산을 207억 3천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73)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대체적인 의견은 부정적인데, 그 이유로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하며 또한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74) 이 법률안은 2006. 8. 22. 안명옥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개정안으로는 아동단체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화원의원의 개정안(2005. 10. 18. 제출), 아동에 대한 영양교육과 급식의 영양기준 설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정복의원의 개정안(2006. 7. 3. 제출), 18세 이상인 자의 보호를 위한 자립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문병호의원의 개정안(2006. 8. 7. 제출) 등이 있다.

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함.

- (3) 전문 의료인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따라 아동학대자와 그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 등을 실시함.
-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조요청을 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도록 의무화함.

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보호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4조).

- (1) 국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함.
-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25조).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포함시킴(안 제26조).

마.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 및 보호를 위해 법원 심리과정에서 보조인의 선임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함(안 제28조).⁷⁵⁾

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⁷⁶⁾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만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아동의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제31조)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75)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925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76)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31면 이하 참고

규정을 보완하려는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장향숙의원이 제출한 가족지원기본법 제 22조에서는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이혼의 의사가 정하여진 가족에 대하여 자녀 양육·재산분할·정서안정 등 이혼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며(제1항), 이혼 후 자녀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제2항), 나아가 이혼 후 부모가 자녀양육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비를 선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⁷⁷⁾ 그리고 김현미의원이 제출한 건강가정기본법안에서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는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혼가족의 자녀양육비 산정 및 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녀양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제3항). 나아가 진수희의원이 제출한 평등가족기본법안 제1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 양육 및 보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부양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4항).⁷⁸⁾

Ⅲ. 아동관련법의 문제점

1. 아동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앞서 살펴본 아동과 관련된 4개의 법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동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러 법률에 나타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동양육의 기본이 되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

77) 제3항은 김재경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규정하는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8) 이러한 내용은 2006. 11. 7.에 제출된 법무부 민법개정안과 유사하다.

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결국 출생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정도의 연령대에 속하는 자를 아동으로 보고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당해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하며(제2조 제2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⁷⁹⁾ 이와는 달리 아동을 포함한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관점을 두고 있는 - 모·부자복지법 제4조 제3호에서는 아동을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며,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⁸⁰⁾

그밖에 성인과의 형사처벌을 달리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2조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라고 정의하고 있다.⁸¹⁾ 또한 민법 제4조에서는 만20세로 성년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20세 미만인 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고,⁸²⁾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제62조). 끝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79)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는 만 6세가 된 이후의 최초 학년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80) 따로 정한 예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있으며,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즉 당해 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에 대한 정의는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아동에 해당하는 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1) 유아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유아를 분리하여 적용한 것이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82)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법개정안에서는 성년이 되는 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관련 법령에 나타난 용어 및 연령 구분

법 률	호 칭	연 령 구 분
아 동 복 지 법	아 동	18세 미만
청 소 년 기 본 법	청 소 년	9세 이상 24세 미만
청 소 년 보 호 법	청 소 년	19세 미만. 단 당해연도에 만19세에 달하는 경우는 제외
소 년 법	소 년	20세 미만
영 유 아 보 육 법	영 유 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민 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단 혼인적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 ⁸³⁾
근 로 기 준 법	연 소 자	18세 미만
모 자 보 건 법	영 유 아	6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 동	18세 미만

위 규정을 종합하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의를 아동복지법과 모·부자복지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에서는 필요에 따른 대상을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령에 관한 제한은 현재 우리의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인 동안에 만18세가 되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추기 곤란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⁸⁴⁾

2. 아동관련법 정비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양육 내지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거나 또는 법률의 일부로서 아동의 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법체계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법의 사각

83)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개정안에서는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것을 민법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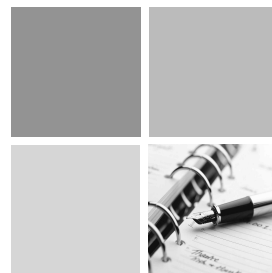
84)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의 미비로 인하여 보호를 주고자 하는 법의 예로는 모·부자복지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동이 존재할 여지를 만든다.

현행법 가운데 아동의 양육에 관한 것은 민법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이며, 그밖에 영유아보육법이나 모·부자복지법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의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아동복지법이 중심이 되며, 다른 법률들에 의하여 보충되어진다. 그밖에 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본법이 중심이 되며,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양육이나 보호의 대상인 아동에 따라 적용되는 법을 달리하거나 또는 아동의 성장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변경되게 함으로서 아동의 보호가 단절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각 분야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아동의 양육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4 장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제 4 장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I. 부모에 의한 양육의 지원

1. 현행 법률에 나타난 아동양육에 관한 책임의 소재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정리해 본다.⁸⁵⁾

앞서 살펴본 법률의 규정을 비교·정리해 보면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의무를 1차적인 책임과 2차적인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차적 책임은 가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부모 등은 가정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입양함으로써 양육하는 것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하여 2차적 책임은 사회와 국가가 부담하며, 특히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적부조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며, 그밖에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책임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의 양육에 관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와 같으며, 아동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85) 아동의 양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제6조에서 가정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조에서 사회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부모양육을 위한 국가의 지원

취업여성 자녀(0-5세)의 수탁률 추정치⁸⁶⁾

	0-5세 아동수	기혼여성 경활률	25-34세 취업모의 0-5세 자녀수	보육시설수	원아수	수탁률
2000	3,969,179	42.4	1,682,932	19,276	686,000	40.8
2001	3,854,184	42.9	1,653,445	20,097	734,192	44.4
2002	3,720,013	43.9	1,633,086	22,147	800,991	49.0
2003	3,598,194	43.7	1,572,411	24,142	858,345	54.6
2004	3,308,130	44.1	1,456,885	26,903	930,252	63.8

보육일반현황(2006년 6월 기준)⁸⁷⁾

구 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시설종류간 비율 (아동현원비율)	11.2%	12.1%	5.5%	56.2%	0.1%	13.5%	1.4%
이용율 비교 (현원/정원)	90.9%	82.1%	82.4%	81.1%	80.7%	69.5%	76.6%
보육아동현원	112,746	121,396	55,302	566,142	1,056	136,156	14,044
보육아동정원	124,096	147,837	67,144	698,296	1,309	195,867	18,328
시설종류간 비율 (아동정원비율)	9.9%	11.8%	5.4%	55.7%	0.1%	15.6%	1.5%
보육시설수	1,507	1,484	995	12,860	49	11,575	291
시설종류간 비율 (시설종류별비율)	5.2%	5.2%	3.5%	44.7%	0.2%	40.2%	1.0%
종사자수	14,393	16,329	8,181	76,473	258	31,562	2,275
시설종류간 비율 (종사자비율)	9.6%	10.9%	5.5%	51.2%	0.2%	21.1%	1.5%
시설 1개당 아동수	8	7	56	44	22	12	48
직원 1인당 아동수	7.8	7.4	6.8	7.4	4.1	4.3	6.2

86) 한국여성개발원(<http://www.kwdi.re.kr>) 홈페이지 참조.

87)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통계자료 참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하여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⁸⁸⁾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국가·사회·가족책임공유형 보육, 보육공공성의 강화,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형 보육을 보육정책의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⁸⁹⁾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 개정(2004. 1. 29 법률 제7153호)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보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심의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법 제5조 및 제6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법 제13조). 또한 보육교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되, 보육교사 자격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였다(법 제2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26조 및 제28조),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였다(법 제29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보육시설의 장등에 대하여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 종사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법 제46조 내지 제48조).

88) 김경희, 영유아보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입법정보 제110호, 2003. 10. 31, 14면 참조.

89)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 자료 참조.

그리고 2005년 개정(2005. 12. 29 법률 7785호)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법 제25조),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며(법 제28조),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법 제21조 1항, 제22조 1항),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대여 또는 자격증 대여를 금지(법 제22조의2)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긴급한 보육서비스는 반드시 국가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소득계층의 경우 국가와 민간부문의 협조체제가 요청된다. 또한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유형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⁹⁰⁾

II. 부모양육을 대체하는 형태에 대한 지원

1. 입양

민법은 2005년 개정에서 일반 양자제도 이외에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 친양자제도는 양친과 양자간에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부여됨으로 국내 입양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i)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고(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iii)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며(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v)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제908조의2 1항). 가정법원은 친

90) 박정선, “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보육정책의 형성과 발달 현황”, 연세사회복지연구 제5권, 1998, 93면 참조.

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며(제908조의 3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 제2항).

최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2004. 3. 5 법률 7183호)을 통하여 아동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23조 제1항).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200만원)와 양육수당(월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책을 추진하며,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입양휴가제”를 2007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2007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입양희망 양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원하는 아동이 없을 경우 다른 입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중도에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희망부모에게 종합적인 입양대상아동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을 2006년 5월부터 운영중이라고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추진하려고 한다. 국내입양 수수료(65~210만원)로 인해 아동을 금전으로 매매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국내입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입양가정의 소득분포현황(2004년)을 보면 전체의 58%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월340만원) 이하의 가정임을 감안하여 입양수수료 및 아동양육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입양가정의 경제

적 부담경감 및 아동건전육성을 위해 입양아동에 대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수준(7만원/인.월)이상의 『입양아동 수당(월 10만원/인.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⁹¹⁾

국내외입양 아동현황

연도별	계	'97년 이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 내	67,607 (30.0%)	54,639	1,426	1,726	1,686	1,770	1,694	1,564	1,641 (42.1%)	1,461 (41.0%)
국 외	157,145 (70.0%)	138,486	2,443	2,409	2,360	2,436	2,365	2,287	2,258 (57.9%)	2,101 (59.0%)
계	224,752	193,125	3,869	4,135	4,046	4,206	4,059	3,851	3,899	3,562

장애아동 입양현황

연도별	구분	전 체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계	비장애	장애	계	비장애	장애	계	비장애	장애
2000년이전		205,175	171,363	33,812	59,477	59,280	197	145,698	112,083	33,615
2001년		4,206	3,449	757	1,770	1,756	14	2,436	1,693	743
2002년		4,059	3,216	843	1,694	1,678	16	2,365	1,538	827
2003년		3,851	3,182	669	1,564	1,544	20	2,258	1638	649
2004년		3,899	3,187	712	1,641	1,634	7	2,258	1,553	705
2005		3,562	2,798	764	1,461	1,434	27	2,101	1,364	737
누 계		224,752 (100.0%)	187,195 (83.3%)	37,557 (16.7%)	67,607 (100.0%)	67,326 (99.6%)	281 (0.4%)	157,145 (100.0%)	119,869 (76.3%)	37,276 (23.7%)

9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2006. 7. 18. 보도자료 참조

2.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 개념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7호). 즉, 친부모가 일시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일정한 기간 대리 양육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양과 구별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한다는 점에서 후견제도와 구별된다.

(2) 가정위탁의 필요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경우, 집단시설에서의 보호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아동 특히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정에서의 보호를 통하여 정서의 안정과 심신의 발달 및 사회성의 획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설보호의 한계로부터 나온 제도가 ‘가정위탁’이며, 입양제도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 또는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현행 가정위탁제도⁹²⁾

1) 가정위탁의 현황

현재 영국, 미국 등 서구에서는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제도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최근 가정위탁제도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92) 아래의 통계자료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http://www.fostercare.or.kr/business/bu_8.htm) 참조.

주요국에서의 가정위탁제도의 개황⁹³⁾

국 명	일 본	미 국	캐나다	영 국	뉴질랜드	호 주	프랑스	독 일
조사년도	1999	1999	1995	1997	1997	2000	1997	1997
아동인구(천명) <연령	25,961 <20	58,080 <15	7,749 <20	11,600	1,035 <18		15,080 <20	15,700 <18
요보호아동	33,292	568,000	50,000	59,384	16,923		120,000	
가정위탁	2,122	272,000	40,000 -45,000	37,000	7,870		57,000	52,000
친족 가정위탁		147,000			6,051			
그룹 홈		96,000						
시설 입소	31,170				1,222			73,000
기타 양육								
가정위탁의 형태 a	통상가정위탁 단기 가정위탁	통상 가정위탁 친족 가정위탁 치료적 가정위탁	통상 가정위탁 친족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통상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통상 가정위탁 평일 가정위탁 주말 가정위탁 3일 가정위탁	긴급레스바이트 일시보호/단기 영속적 케어로 이행/ 친족 가정위탁 부분적 가족 케어 청년 그룹 홈 전문적 가정양육	통상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치료적 가정위탁	일시적 장기/친족 단기/긴급/전문적 /치료교육적/평일
가정위탁 수당(US 달러) 아동 1인 1개월 당	633+ b 비과세	319 - 393		양육비 전액 비과세	아동 164 청년 316	486 -		

- a. 제도로써 확립된 것과 운용상의 것이 포함된 것임
b. 가정위탁 수당과 생활비용면, 연장아동에게는 교육관계비 등 추가됨

93) 庄司順一/小山修/安藤朗子ほか, “歐米における里親養育研究の動向(2)”, 日本子ども家庭総合研究所 紀要38巻, 日本子ども家庭総合研究所, 2002, 125面(우병창, “일본에 있어서 아동인권의 현황”, 가족법연구 제17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182면 재인용).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⁹⁴⁾

	계	기 아	미 혼 모 아 동	미 아	비행가출 부랑아	빈곤, 실직, 학대등 기타
1990	5,721	1,844	2,369	360	1,148	-
1995	4,576	1,227	1,285	149	1,915	-
2000	9,085	1,270	4,190	152	1,757	1,716
2001	10,586	717	4,897	98	728	4,146
2002	10,057	634	4,337	74	749	4,263
2003	10,222	628	4,457	79	595	4,463
2004	9,393	481	4,004	62	581	4,265
2005	9,420	429	2,638	63	1,413	4,877
2006 (상반기)	5,138	122	1,244	29	446	3,297

요보호아동의 보호내용

	계	시설 보호				가정 보호			
		소계	아동 시설	장애아 시설	미혼모 시설	소계	위탁 보호	입양	소년 소녀가정 책정
1990	5,721	3,734	3,734			1,987	1,134	853	-
1995	4,576	2,819	2,819			1,757	505	472	780
2000	9,085		4,481			4,604	2,285	1,755	564
2001	10,586	4,774	4,671	41	62	5,812	3,090	1,848	874
2002	10,057	4,663	4,547	57	59	5,394	2,177	2,544	673
2003	10,222	4,824	4,747	42	35	5,398	2,392	2,506	500
2004	9,393	4,782	4,680	38	64	4,611	2,212	2,100	299
2005	9,420	4,818	4,769	48	1	4,602	2,322	1,873	407
2006 (상반기)	5,138	1,731	1,697	33	1	3,407	2,479	624	304

94)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참조.

2) 가정위탁의 유형

가정위탁은 일반 가정위탁(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이 있으며, 대리양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위탁현황⁹⁵⁾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양육	계
2003	1,003	4,007	7,552	5,313
2004	869	4,133	5,196	7,169
2005	566	3,541	3,458	8,816

3) 관련법 규정

아동복지법은 2005년 개정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며(동법 제28조의2),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②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③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④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⑤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⑦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제28조의3 제1항),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①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②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③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④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동법 제2항).

아동복지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가정위탁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95)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일시적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도 포함된다.

4) 가정위탁 절차

가정위탁 절차는 위탁아동의 경우는 신청상담→위탁아동보호결정→위탁가정 선정→관계형성 및 친해지기 프로그램→가정위탁→사례관리→친가정복귀, 위탁가정의 경우 가족의 동의→위탁부모 신청→가정방문→관계형성 및 친해지기 프로그램→가정위탁→사례관리→아동귀가로 이루어진다.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 하며(아동복지시행령 제5조 1항), 지방자치단체 장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동조 2항). 가정위탁하여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양육을 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동 시행령 제8조 1항), 귀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시설장 또는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전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 시행령 동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정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 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9조).

5) 지원내용⁹⁶⁾

가정위탁의 경우 정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육보조금

위탁아동 1인당 월 70,00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96) 중앙가정위탁센터 홈페이지 참조.

나)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등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상해보험지원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료비 등 지원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전세금 지원

대리양육 위탁가정이나 친인척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가정이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일반주택(3~4천만원)의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 위탁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이다.

마)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위탁가정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정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며, 정서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개별·집단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양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시·도 결연기관 대상아동으로 선정하여 결연을 맺기도 한다.

2004년 아동복지예산을 통해 본 보호형태별 아동지원비용

보호형태	가정위탁양육비	소년소녀가정지원	시설아동지원	입양아동양육보조 장애아동
양육비 (1인/1월)	70천원/	70천원/인·월	약439천원/인·월	500천원/인·월
기타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시 급여 별도 (미지정 사례 있음)	-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시 급여 별도 - 후원금	- 후원금	200천원/인.월-의료 지원

(4) 현행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정위탁의 대부분이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에 해당된다.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위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상 친권제도와 관련하여 가정위탁 양육자의 권리의무가 불명확하다. 위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위탁양육자의 법적 지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⁹⁷⁾ 또한 가정위탁양육자나 위탁가정의 객관적인 자격조건이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아동보호시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법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제20조)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설입소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시설입소의 경우에도 집단시설 보다는 소규모의 ‘공동생활가정’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및 요보호아동이 아닌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며 아동복지법상 입소절차를 적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호를 의뢰하며, 시설장이 긴급보호시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요보호아동 이외의 경우에는 시설장과 아동보호자 간의 입소계약이 가능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한다. 요보호아동의 아동에 대해서는 실비 입소 및 수납이 가능하다(아동복지법 제32조).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5인 이상 보호하고 있는 곳을 시설로 분류하고 관리하며, 생활 아동 5인 이상 7인 이하의 미신고시설(개인시설 포함)중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신고 유도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및 종사자기준이 아동양육시설

97) 러시아의 경우, 가정위탁 양육자는 가정위탁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후견인(보좌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러시아가족법 제153조 제3항).

보다 까다롭지 않으며 소규모 미신고시설에게는 적합한 가정보호형태의 보호방법이다.⁹⁸⁾ 시설기준 미달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미신고시설은⁹⁹⁾ 복권기금 등을 통해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시설운영자의 자구노력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¹⁰⁰⁾

Ⅲ.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의 의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자산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급부하고 가족의 생활 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¹⁰¹⁾ 아동수당의 수혜대상은 어디까지나 자녀이지만,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동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공적인 보장인 것이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아동 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동수당으로 불리며 일부 국가에서 가족수당이라고도 한다.¹⁰²⁾

2.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1926년 뉴질랜드이다. 이후 유럽 각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제정·시행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다른 유럽국가들, 남미, 아프리카의 신흥독립국에서도 이 제도가 보급·전개되었다.¹⁰³⁾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고, 영국과 호주는 사회

98)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18평이상 주택형 숙사), 종사자 기준(시설장 1인, 보육사 1인, 아동 7인이내)

99) 아동복지법시행령은 별표 1 아동복지시설의안전기준[제3조관련], 별표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직종별자격기준[제13조관련] 등을 두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11조에서도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0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 관리 및 아동보호대책 사업안내> 참조.

101) 이제완·최영선,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164면.

102) 아동수당이라는 용어는 1952년 ILO 협약 제102호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이 양자의 혼합을 의미한다.

103) 아동수당에 관한 외국제도는 이제완·최영선,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168면 이하를 정리한 것이다.

보험의 일부로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 새로운 출생수당 법령이 만들어졌으며, 이 수당은 영아수당(APJE), 입양보조금(AAD), 사설탁아보조금(L'AFEAMA), 가정탁아보조금(L'AGED)과 교체될 것이라고 한다. 출생 및 입양보조금은 826.10€, 기본수당은 3년 동안 매달 165.22€이며, 이 두 수당은 가족 수입에 따른다. 그 이외에도 한부모 수당(API), 생계수당(ASF), 장애아를 위한 특별교육수당(AES), 신하기수당, 추가가족수당 등이 있다.¹⁰⁴⁾ 2005년 현재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의 인구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연령구조상 변화를 초래하여 향후 이로 인한 부양비의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¹⁰⁵⁾ 또한 노동력의 감소는 여성노동을 필요로 하므로 아동부양을 사회나 국가가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감소된 가족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부양해야 할 아동의 절대수는 줄었지만 부양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교육비의 상대적 과중으로 아동부양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증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198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아동관련 지원은 요보호아동이나 장애아동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하여 가정내에서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가가 아동에 대한 최종적인 양육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수당의 고려요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의 배분, 급여의 내용, 급여전달체계 및 재정에 관한

104) LAJAUNIE Claire, 고령화와 저출산: 프랑스의 가족정책, 세계, 여성을 말한다(2005 국제여성정책심포지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5, 155-156면 참조

105) 2006. 11. 21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 2026년 20.8%, 2050년 38.2%로 빠르게 높아진다”고 한다.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급여의 배분은 급여를 받을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⁶⁾ 그리고 아동수당을 받는 자의 연령은 대체로 아동의 범위에 속하는데, 다만 학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¹⁰⁷⁾

급여는 구체적으로 기회, 권력, 사회서비스, 신용, 물품, 현금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¹⁰⁸⁾ 또한 급여의 액수에 있어서도 모든 아동에게 균일한 액수로 지급하는 국가도 있지만 아동의 출생순위나 연령 또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국가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급되는 급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¹⁰⁹⁾

급여의 전달체계는 급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와 중앙집권, 관료중심 행정과 시민참여 행정, 어디에 가치의 역점을 두는가에 따라 조직체계의 수립에 있어서 선택이 달라진다고 한다.¹¹⁰⁾ 아동수당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의 전달체계를 보면 일반조세로 아동수당을 지불하는 국가는 대개 정부부문에서 관리되며,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불하는 경우는 고용인의 기여금으로 지원되며, 공적 지도감독자에 의해 반자치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정부의 노동 및 사회청에서 전반적인 감독을 하며, 영국은 사회보장국의 급여청에서 아동급여와 세금공제를 관리한다. 한편 독일은 연방정부의 재정부에서 총괄하며, 호주는 가족·지역서비스부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운영주체이다.

재정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부담은 보편주의와 사회부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국가에서 주로 선택하고 고용관계 유형에서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과 사회보험 유형의 국가에서는 고용주 부담이 대부분이지만 고용인과 고용주가 일정량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보편주의 유형으로

106) 초기에는 영국의 둘째 자녀부터, 일본의 경우에는 셋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였다.

107) 영국의 경우에는 16세 이하가 원칙이지만 학생이라면 19세 이하까지 지급하며, 호주의 경우에는 20세가 원칙이지만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24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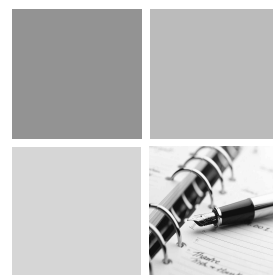
108) 최근에 3자녀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공급하는 것도 아동수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109) 외국의 아동수당 급여실태에 관하여는 이제완·최영선,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172면 참고.

110) 이제완·최영선,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173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도 고용주 부담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독일, 호주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부담으로 충당하고, 프랑스는 고용주와 정부가 부담하며, 일본은 고용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제 5 장 아동학대와 국가의 개입



제 5 장 아동학대와 국가의 개입

I. 아동학대의 개념과 사례유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동법 제2조 4호). 즉,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 것이다.¹¹¹⁾ 또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9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40조).

그런데 우리의 경우, 아동에게 비록 신체적 위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의 의도가 훈육에 있었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¹¹²⁾ 아동학대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도 아울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0. 5. 24. 제정)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친권을 가지는 자, 미성년후견인, 기타의 자로 아동을 현재 감호(監護)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그 감호하는 아동(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 대

111) <http://www.goodneighbors.org/child/abuse/general.asp>(굿네이비스 아동학대연구소)

112) 원혜옥,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253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915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여 1. 아동의 심신에 외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2.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외설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 3. 아동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현저한 감식(減食) 또는 장기간의 방치, 기타 보호자로서의 감호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것, 4. 아동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부모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아동의 권리 협약 제19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는데, 부모가 가지는 친권을 남용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친권의 남용은 자녀의 신상에 관한 남용과 자녀의 재산에 관한 남용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신상에 관한 남용은 다시 적극적 남용과 소극적 남용으로 구별된다. 신상에 관한 적극적 남용의 예로서는 보호교양권의 남용, 거소지정권의 남용, 징계권의 남용, 인도청구권의 남용 등을 들 수 있고, 소극적 남용의 예로서는 무단가출하여 자녀를 방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¹¹³⁾ 이 경우 방치(neglect)는 자녀의 건강, 도덕 그리고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부모의 보호를 자녀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¹¹⁴⁾

친권의 소극적 남용의 예로는 부 사망 후 모가 가출하여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 필요한 의·식·주의 공급을 못하는 것,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는 것, 자의 비행·과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간과·방임하는 것, 자녀가 제3자에 의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장소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데도 인도청구를 하지 않는 것, 공동친권행사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를 학대하는데 그냥 방임하고 있는 것 등을 든다.¹¹⁵⁾

1968년 독일에서는 ‘여호아의 증인’을 믿는 부모가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생후 3일된 유아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전 11시에 아버지는 생명이 위독한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수혈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 오후 5시경 아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의사들은 아버지를 불러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혈뿐이라고 설명하고, 수혈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이의 아버지는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

113) 최진섭,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381면.

114) Hershkowitz, Due Process and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F. L. Q, vol XIX, no.3, 1985, p.289; 최진섭,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388면에서 재인용.

115) 김유미, 현행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336면.

였다. 결국 설득에 실패한 의사들은 후견법원 판사에게 연락하였고, 연락을 받은 판사는 오후 6시 30분 경 병원에 왔다. 후견법원 판사 또한 아이의 아버지가 수혈에 동의하도록 설득을 시도하고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아이의 아버지는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였다. 후견법원 판사는 임시조치로서 그 자리에서 부모의 양육권을 상실시키고, 상실된 양육권에 대한 후견인으로 담당의사를 선임하였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의사는 즉시 수혈을 하여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 후 건강을 되찾은 아이는 양육권을 회복한 부모에게 인도되었다. 나중에 법원은 이 아버지를 형사상 처벌(벌금형 선고)하면서 종교적 신념은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구할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남겼다.¹¹⁶⁾

우리나라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가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결과, 그 딸이 사망하게 되자 어머니를 형사상 처벌(유기치사죄)한 예가 있다.¹¹⁷⁾ 그렇지만 이 경우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독일과는 달리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긴급한 상황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아동에 대한 방임 이외에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유기 등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아직 이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체벌 등 신체적 위해에 대한 우리의 완화된 인식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에 대하여 기존의 아동복지법상의 기준 보다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16) OLG Hamm, FamRZ 1968, 221f ; 김상용, 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 78-79면에서 재인용.

117)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평석이 있다: 최문찬, 유기치사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양심법과의 관계, 형사판례연구 1호, 95-112면, 1993, 박영사; 오정권, 종교적 양심과 수혈 거부, 부산법조 17호, 61-86면, 2000, 부산지방변호사회, 윤진수, 미국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치료 거부에 따르는 법적 문제, 가족법연구 18권 1호, 9-74면, 2004, 한국가족법학회.

II. 외국의 입법례

이하에서 살펴보는 외국의 법령은 아동학대에 관한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일본과 프랑스 및 영국의 예를 참고하였다.

1. 일본

(1)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0. 5. 24. 제정)

① 아동학대의 정의

이 법률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친권을 가지는 자, 미성년후견인, 기타의 자로 아동을 현재 감호(監護)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그 감호하는 아동(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1. 아동의 심신에 외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2.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외설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
3. 아동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현저한 감식(減食) 또는 장기간의 방치, 기타 보호자로서의 감호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것,
4. 아동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하는 것

② 아동학대 조기발견 노력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양호교사, 변호사 기타 아동복지에 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음을 자각하고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③ 필요한 조사

도도부현(都道府縣)¹¹⁸⁾ 지사는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118) 역주 : 일본의 전국 행정구획 1都 1道 2府 43縣의 총칭

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제9조 1항).

④ 면회·통신 제한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채택된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장 또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長은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당해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에 대하여 당해 아동과의 면회 또는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제12조).

⑤ 의견청취

도도부현 지시는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채택되고 당해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동항 제2호의 조치가 채택된 경우에 당해 아동에게 채택된 동항 제3호의 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항 제2호의 지도를 하는 아동복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13조).

⑥ 처벌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당해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동법 제14조 2항).

⑦ 민법과의 관계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에 규정하는 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도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제15조).

⑧ 부칙

제2조(검토)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이 법률의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한다.

(2) 아동복지법

일본 아동복지법의 구성체계는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특별법인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모자 및 과부복지법, 모자보건법, 아동수당법이 있으며, 이들을 ‘아동복지6법’이라고 부른다.¹¹⁹⁾

① 적용대상 아동

동법 제4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영아(1세 미만), 유아(1세 이상 초등학교 입학 전), 소년(초등학교 입학 이상 18세 미만)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급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법은 태아부터 18세까지의 전체 아동을 다시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부모가 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재가장애 아동·장기질환 아동, (3) 한부모가정 아동, (4) 기타 일반가정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동법 제6조의3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자(아동을 현재 양육하는 자)가 없거나 보호자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부적당한 아동으로 개념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보호자가 ① 사망, ② 장기입원, ③ 장기투옥, ④ 행방불명된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 의해 ⑤ 유기된 아동을 의미한다. 후자는 ⑥ 학대 또는 ⑦ 방임한 아동, 보호자가 보호를 제공하기에 곤란한 아동 ⑧ 비행아동(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아동), ⑨ 중증장애아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분류하는 기준이 보호자의 역할에 따른 요보호 발생사유별로 일관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된 유형에 중첩이 없다.¹²⁰⁾

② 전달체계

아동복지심의회(제8조와 제9조)는 심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에는 물론 도도부현(광역) 및 시정촌(기초)에도 설치되어 있어 행정단위별 상호연계는 물론 중앙 사회보장심의회와도 연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심의·조정기능이 강화됨과 동시에 아동복지 급여와 사회보장제도 급여 사이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있다. 요보호아동 신고의무, 비행아동 통고의무(제25조), 일시보호 신고의무(제30조), 일시보호기간의 제한(제33조), 친권제한·분리(제28조), 친권상실(제33조의6), 가정재판소에의 송치(제27조의3) 등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됨으로써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이 강화되었다.¹²¹⁾

또한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아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사무소 내 아동가정상담실, 아동상담소, 보건소, 학교와 각종 시설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지역사회 요보호아동대책협의회를 구축하고 1개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¹²²⁾

119)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72면.

120)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79면.

121)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80면.

③ 재정

동법 제49조의2 내지 제56조의5에 규정된 각종 아동복지행정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무자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도도부현·시정촌 등의 부담비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④ 권리성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학대할 경우 그 보호자를 처벌하며, 아동의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고 가정재판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강제로 분리하여 국가가 보호하는 등 일련의 사회적 개입의 강제조치(동법 제28조 친권제한·분리보호, 아동학대방지법 제12조 면회·통신제한, 제15조 친권상실)를 취함으로써 아동의 양육을 경제적 지원은 물론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강한 의지를 입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인 청문절차가 동법 제26조(아동상담소장의 조치관련 청문), 제33조의4(조치해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청취의무) 외에 제46조(시설장 및 위탁부모의 아동양육상황 관련 청문) 등의 규정을 통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21조의3(지정 육성의료기관의 진료내용 및 진료보수에 대한 심사청구), 제59조의4(도도부현의 업무처리에 대한 재심사청구), 제33조의7과 제33조의8(법정후견인의 선임 및 해임관련 청구) 등의 이의신청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2002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친권의 부분적 박탈 및 정지제도(프랑스 민법 제379조의1)를 도입하였다.

(1) 친권의 상실

프랑스는 제9편에서 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장 자녀의 인격에 대한 친권

122)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91면.

(제371조 - 제381조), 제2장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민법 제382조 - 제387조)으로 나누어져 있다. 2002년 개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는 자녀의 연령과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그와 관계된 결정에 자녀를 참여시킨다(제371조의1 제3항). 부모 각각은 자신의 자력, 타방의 자력 및 자녀의 필요에 따라 자녀의 부양 및 교육을 분담하여야 하며(제371조의2 제1항), 이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된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동조 제2항).

예외적인 상황 및 특히 부모 중의 일방이 친권행사권을 상실한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관은 자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제3자는 되도록이면 친족이 선택한 사람으로 한다. 가사법관은 제373조의2의 8 및 제373조의2의 11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고 결정을 한다(제373조의3 제2항).

자녀가 제3자에게 위탁된 때에도 부모는 여전히 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수탁자는 자녀의 감호와 교육에 관한 모든 일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제373조의4 제1항). 가사법관은 자녀를 임시로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이 제3자가 후견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373조의4 제2항).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임은 가사법관의 판결에 의한다(제377조의1 제1항). 그러나 친권위임의 판결을 함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관은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제3의 친권수임자와 공동으로 친권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친권의 분할적 행사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에 법관은 부모 쌍방, 부모 중의 일방, 친권수임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결을 한다. 이 때 법관은 제373조의 2의 11의 규정에 따라 판결한다(동조 3항).

새로운 상황이 증명된다면 모든 경우에 새로운 판결에 의하여 친권위임을 종료하거나 친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시킬 수 있다(제377조의2 제1항). 아이를 부모에게 인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가사법관은, 부모가 극빈상태에 있지 않은 한, 부모로 하여금 그 동안의 아이의 생활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다(동조 2항).

제378조 제1항¹²³⁾에 의하여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 이외에 자녀학대, 습관성 알콜·향

123) 자녀 개인에 대하여 행해진 중죄 또는 경죄의 정범,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서 또는 자

정신성물질 과도섭취, 공지된 불법적 비행·행태 또는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결여로 인하여 자녀의 안전·건강·정신에 명백한 위험을 주는 부모는 친권의 전부를 박탈할 수 있다(제378조의1 제1항). 자녀에 대하여 교육구조조치가 취해진 때에 부모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375조의7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권의 전부를 박탈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친권 전부박탈의 소는 검사, 친족 또는 자녀의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대심지방법원에서 재판한다(동조 제3항). 법원은 친권의 전부 박탈 대신에 친권의 내용 중 특정부분에 한정된 일부박탈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 박탈의 효력을 이미 출생한 자녀 중 일부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379조의1).

제378조 및 제378조의1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친권 및 기타 권리의 전부를 박탈당한 부모는 대심지방법원에 새로운 상황을 증명함으로써 그가 박탈당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제381조 제1항). 전항의 회복청구의 소는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박탈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최소한 1년이 경과한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회복청구의 소가 기각된 때에는 그로부터 다시 1년이 경과하여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녀의 입양이 실행된 때에는 어떠한 회복청구의 소도 이를 각하한다(동조 제2항). 친권회복의 소가 인용된 경우에 검사는 경우에 따라 교육구조조치를 청구한다(동조 제3항).

(2) 교육원조제도(De l'assistance éducative)

친권이 해제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또는 정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교육상황이 심각하게 위태로운 때에는, 부모 쌍방 또는 일방, 아이를 맡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후견인, 미성년자 자신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교육구조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교육구조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75조 제1항).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교육구조인 경우, 이 조치를 명하는 판결에서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조치의 기간을 정한다. 이 조치는 이유를 설시한 판결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동조 제2항).

녀에 의하여 행해진 중죄 또는 경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모는 명시적인 형사판결에 따라 친권 전부를 박탈할 수 있다.

법관은 가능한 한 미성년자로 하여금 현재의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법관은 유자격자 또는 공식적인 관찰·교육·재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족이 처해있는 물질적·정신적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조력 및 조언을 담당하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들 개인 또는 기관은 아이의 성장과정을 관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법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제375조의2 제1항). 또한 법관은 현재의 장소를 유지하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일반적·전문적 성격의 위생 또는 교육기관의 정기적 방문의무 또는 직업활동 수행의무와 같은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미성년자를 현재의 장소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관은 ① 부모 중 타방, ② 부모 이외의 다른 친족 또는 신뢰할만한 제3자, ③ 일반적·전문적 성격의 위생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각 도의 아동사회부조기관에게 아이를 위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제375조의3 제1항).

교육원조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법관은 직권,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 아이를 수탁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미성년자 개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375조의6).

자녀가 교육원조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보유하고, 교육원조조치의 적용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교육원조조치의 실행기간 중에 부모는 미성년담당 법관의 허가가 없는 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해제할 수 없다(제375조의7 제1항). 자녀를 부모의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보유하고, 법관은 면접교섭권의 행사방식을 정하며 자녀의 이익에 필요한 때에는 이들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관은 아이의 거주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의 방문권 행사에 편리한 곳을 탐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부모 및 부양의무 있는 직계존속은 교육구조조치의 대상이 된 자녀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여전히 이를 부담하여야 하나, 법관은 이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제375조의8). 친권의 포기·양도는 그것이 이하에서 정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제376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친권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믿을만한 가족구성원, 아동의 수용을 인가받은 기관 또는 도 아동사회구조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부모는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다(제377조 제1항). 자녀에게 명백하게 불이익한 경우 또는 부모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기관 또는 아동을 수용하는 도 아동사회구조기관도 친권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위임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본조에서 정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은 부모 쌍방을 심리에 소환하여야 한다. 문제된 자녀가 교육적 원조조치의 대상인 때에는 친권행사의 위탁은 아동담당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행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3. 영국

(1) 1989년 아동법의 성립

영국의 아동법은 1989년에 제정되어 1991년 10월 14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아동의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은 보건사회부가 주도하고 법률위원회의 가족법팀의 보조에 의하여 1984년부터 전체 영국 아동법이 상세히 재검토되는 오랜시간의 협동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이 아동보호법의 재검토는 우선 아동과 관련된 공법과 관계되는 것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분야는 특히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마련된 지방행정당국의 봉사내용과 가족관계가 실패한 경우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관계되는 것이었다.¹²⁴⁾

또 1989년 아동법의 제정은 종전의 법을 합리화시키고 단순화시킬 필요에 의하여서도 촉진되었다. 종전의 아동법은 다른 대부분의 영국법에서와 같이 제정법과 관례법의 양자를 통하여 주로 권리보다는 구제의 견지에서 그때 그때의 근거 위에서 발전되어 왔고 또 구제의 절차는 청원이 되어진 관할이나 연루된 법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서 법이 복잡하였다. 이 복잡한 구조속에서 실제로는 두 개의 구별되는 체계가 있었는데, 사법을 취급하는 것과 공법을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넓게 말하자면, '공적인 명령'은 지방당국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사적 명령'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체계는 각각 발전하

124) 조미경, 영국법상 아동보호(Gillick 판결) - 영국가족법학의 중심동향, 가족법연구 9호, 467면.

여서 다른 체계와 독립적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변칙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통일된 1989년 아동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게 되어, 아동의 양육과 보호,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행정봉사업무에 관련된 공법과 사법의 양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재판권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법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었다.

(2) 1989년 아동법의 기본원칙과 주요변화

1989년 아동법은 사법과 공법분야의 양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의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법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명령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모든 케이스에서 지배하는 기본원칙은 제1조 제1항에서 아동의 복리(child's welfare)를 최우선으로 고려(paramount consideration)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의 독립성은 보호되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불개입원칙(non-intervention principle)’은 아동의 복리의 최고성(paramountcy of child's welfare)을 위해서는 양보되어, 이 법 제1조 제5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가정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989년 아동법이 종전의 법과 다른 점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는 公權이 私權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제31조에 명정하여 아동이 심각한 위해(significant harm)에 처한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Care and supervision orders)을 발하게 하며, 이 법에 의한 통합된 절차로 제8조에 의한 거주명령(Residence order)에 의하여 아동의 주거를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도 신속하게 결정하게 한 것은 1989년 아동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¹²⁵⁾

(3) 1989년 아동법상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

① ‘부모의 책임’의 의미

1989년 아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parental rights and duties)의 개념을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 개념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 부모의 책임은 1989년 아동법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강조된 원칙중의 하나이다.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출생시에 혼인중인 경우에는, 그들은 각각 그 아동에 대해

125) 조미경, 영국법상 아동보호(Gillick 판결) - 영국가족법학의 중심동향, 가족법연구 9호, 469-470면.

여 자동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지게 된다.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출생시에 혼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가 부모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부가 부모의 책임을 지게 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법률위원회는 부모의 책임을 이루는 제정법상의 목록을 마련하는 것은 실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책임의 내용들은 다양한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Lowe교수는, 합의된 목록은 없지만 부모의 책임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고 자세히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¹²⁶⁾

- a. 아동을 위하여 가정을 마련하는 일
- b. 아동과의 교섭을 가지는 일
- c. 아동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 결정하고 그 교육을 받게 하는 일
- d. 아동의 종교를 결정하는 일
- e. 아동을 징계하는 일
- f. 아동의 의료처치에 동의하는 일
- g. 아동의 혼인에 동의하는 일
- h.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는 일
- i. 아동의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는 일
- j. 아동을 연합왕국의 밖으로 데려가고 아동의 이민에 동의하는 일
- k. 아동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 l. 아동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일
- m. 아동의 성을 바꾸는데 동의하는 일
- n. 소송절차에서 아동을 대리하는 일
- o. 사망한 아동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일
- p.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일 등

② 부모의 책임의 종료

상술한 부모의 책임은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되나, 아동이 그 자신의 문제

126) P.M.Bromley & N.V.Lowe, Bromley's Family Law, 8th ed., Butterworths, 1992, p. 301; 조미경, 영국법상 아동보호(Gillick 판결) - 영국가족법학의 중심동향, 가족법연구 9호, 472면에서 재인용.

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발전되면 그 정도에 따라 조정된다. 따라서 길릭판결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책임은 아동 자신이 결정을 할 만큼 아동이 성숙하고 충분히 지혜롭다는 어떤 결정과 관련하여 끝날 수도 있다고 한다.¹²⁷⁾

(4) 아동법의 주요내용

아동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아동의 욕구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둘째 부모와 협력하여야 하고, 셋째 인종·문화·종교·언어와 같이 아동이 경험한 영역과 연결되어야 하며, 넷째 가족을 원조할 경우에는 각 가족과 협조하여야 하고, 다섯째 서비스는 각 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아동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법에서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 주 정부가 행하여야 할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지위와 부모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학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에서의 전문가와 기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밖에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서도 아동법에서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여 모든 사립 보육시설과 5세 미만 유아들을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보수를 받고 돌보는 사람들은 지방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¹²⁸⁾

127) 조미경, 영국법상 아동보호(Gillick 판결) - 영국가족법학의 중심동향, 가족법연구 9호, 473면.

128) 2004년에 개정된 아동법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허용되나, 너무 심한 체벌을 가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에서는 어인의 몸에 멍이 들게 하는 행위, 피부에 굵힌 상처를 내는 행위, 피부가 붉게 변할 정도의 타격을 가하는 행위, 정신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Ⅲ. 아동학대에 관한 현행법 검토

1. 학대아동의 발견

(1) 신고체계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23조), 이에 따라 24시간 긴급전화 1391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동법 제24조), 2006년 4월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3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¹²⁹⁾

(2) 신고자와 신고의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동법 제26조 1항),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2항).¹³⁰⁾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의2).

그렇지만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¹³¹⁾ 경찰¹³²⁾ 등

129) <http://www.goodneighbors.org/child/abuse/system.asp>

130) 2006. 9. 27. 법률 제8006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131) 일본의 경우, 변호사도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¹³³⁾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 발견된 미아나 기아에 대한 신고의무나 신고기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¹³⁴⁾

(3) 현장조사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7조 1항). 법 규정에는 ‘지체없이’라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개발한 상담원용 업무메뉴얼에는 위급성에 따라 현장조사에 임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응급아동학대 사례의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학대발생 장소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¹³⁵⁾ 따라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아동복지법 제27조 ‘지체없이’는 ‘24시간 이내’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¹³⁶⁾

그리고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그 가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현장조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가정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법원이 강제적인 현장조사 명령을 발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³⁷⁾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부모·의사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친권개입이 어려운 경우 경찰·검찰의 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¹³⁸⁾

영국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아동사정명령(child assessment order)을 부여받아 8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都道府縣 지사는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한 법률 제5조),

132)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계법의 연구, 426면.

133)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계법의 연구, 426면.

134) 이해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87-8면.

135)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176면.

136) 이해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93면.

137)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176면.

138) 이해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87-8면.

아동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 사례판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동법 제27조 2항),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등을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3항). 이러한 근거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사례를 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각 사례에 따른 적절한 개입 계획을 세운다. 즉, 아동학대사례는 가정내 보호, 격리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¹³⁹⁾ 이와 같은 사례판정에 따라 가정내에서의 아동양육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2. 국가의 개입

(1) 원칙

자녀의 양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해야 하며(동 협약 제5조), 부모는 아동 양육에 공동 책임을 져야하고,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18조). 또한 아동도 우선적으로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동 협약 제7조).¹⁴⁰⁾ 따라서 부모의 양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아동 양육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보호는 가족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에 의한 보호는 가능한 자

139) <http://www.goodneighbors.org/child/abuse/system.asp>

140)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은 http://korea1391.org/sub2_01.htm 참조.

하는 것이 타당하다.¹⁴¹⁾ 이러한 태도가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 가족제도의 보장에도 부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도 아동학대의 유형에 포함되며, 학대의 사례유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에서도 65% 정도 이상의 아동이 원래 가정에 그대로 보호되고 있는 사실¹⁴²⁾에 기초하여 볼 때, 아동학대의 재발을 위해서는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건강가정 기본법 등에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선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3) 상담과 치료의 강제 필요

자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직권적 개입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와 병행하여 가족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기관과 법원간의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문적인 지식과 사명감을 겸비한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확보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¹⁴³⁾

또한 친권상실에 이를 정도로 친권남용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또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회복지기관에의 교육수강을 명하고 정상적인 친자관계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등을 하도록 명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141) 권영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제11집, 2003, 275면.

142)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 단위 (건, %)

연도	가정방문 상담	격리조치유무				치료조치유무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사망	소계	치료	비치료	소계
2003	2,921	1,878	1,040	3	2,921	83	2,838	2,921
2004	3,891	2,613	1,268	10	3,891	179	3,712	3,891
2005	4,633	3,238	1,379	16	4,633	194	4,439	4,633
계	11,445	7,729	3,687	29	11,445	456	10,989	11,445

* 2003년 새로 구분하여 살펴봄, 중복표시 가능항목

143) 김상용, 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 85면.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¹⁴⁴⁾

가해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수강 및 서비스 참여의 강제화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¹⁴⁵⁾ 그러므로 아동복지법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상담수강, 치료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⁶⁾ 또한 아동학대, 아동방임문제는 수사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가사사건으로 면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증진하는 가장 최우선의 길이라고 본다.¹⁴⁷⁾

또한 우리의 경우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서 성매매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 상담·치료 등의 급여나 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¹⁴⁸⁾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① 긴급격리명령 필요

학대와 방임으로 강제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아동의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 일시보호 동의서 내지 시설입소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여 격리하지 못하고 다시 사법경찰에 수사요청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가정법원에 직접 아동의 긴급격리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¹⁴⁹⁾ 다만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안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에는 시간의 제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아동복지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 경우 아동복지기관이 직접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키고 임시로 자신의 보호하에

144) 최진섭,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394면.

145)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0권 1호, 2006, 164면.

146)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171면.

147) 이호균, 180면. 다만 가정폭력방지법 제40조에는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다.

148)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88-9면.

149)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178면.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¹⁵⁰⁾

② 가정외에서 보호하는 경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이 대체적인 친자관계의 설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아동의 권리 협약 제20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으로는 입양(아동의 권리 협약 제21조)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입양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2005년에 개정된 민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입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집단 아동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시설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도 이기는 하지만 가정에 가까운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위탁의 지원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가정복귀

아동의 양육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되면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아동의 가정 복귀의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며, 친권회복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통하여 가정법원의 평가와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¹⁵¹⁾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는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채택되고 당해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동항 제2호의 조치가 채택된

150) 김상용, 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 83면.

151)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183면.

경우에 당해 아동에게 채택된 동향 제3호의 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향 제2호의 지도를 하는 아동복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일본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한 독일의 경우, 법원이 자녀 보호를 위하여 취한 법적 조치(민법 제1666조 내지 1667조)는 자녀의 복리에 대한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민법 제1696조). 그러므로 설령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시적으로 부모의 양육권을 상실시켰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부모의 양육권을 회복시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양육이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한 직접적인 자녀양육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¹⁵²⁾

(5) 친권의 박탈

부모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그 자녀를 보호·교양할 기본권을 가지므로 국가는 가족생활의 사적영역인 친권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자녀는 그 부모가 보호·교양할 때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적절히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친권에 의하여 미성년자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이익이 조화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국가는 자녀를 보호할 이익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이익은 친권상실제도에 의하여 담보된다.¹⁵³⁾

그렇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에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친권상실선고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를 원조하여 부모와 자녀의 공동생활을 도모하면서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중간적 제재수단 내지 원조 방법은 없는지가 문제된다.¹⁵⁴⁾ 즉, 최후의 수단인 친권상실선고로 가기 전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여러 가지 중간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¹⁵⁵⁾

152) Stumpf, Opferschutz bei Kindesmißhandlung, 1995, S. 77.

153) 최진섭,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379-380면.

154) 김유미, 현행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가족법연구 제11호, 1997, 337면.

155) 김유미, 현행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339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의 개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아동복지법 제12조).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 아동과 직접 접하게 되는 아동상담소장에게도 친권상실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⁵⁶⁾ 이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타인에게 위탁되거나 일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그들에게 친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가 친권에 따른 자녀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되돌려 받아 다시 학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자녀 자신도 구제의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¹⁵⁷⁾ 입법론적으로는 친권자의 의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 가령 영미법상의 소송상의 대리인(guardian ad litem) 같은 특별대리인을 두어 그가 친권상실신고 심판에서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대리하게 하는 방법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¹⁵⁸⁾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친족이나 가정법원의 촉탁기관으로 구성된 아동관계전문가 또는 아동관계단체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¹⁵⁹⁾

그리고 친권상실선고의 절차에서 자녀의 의사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녀의 의사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전적으로 그것에 의존해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은 친자관계에 정신적 상처를 주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친권상실 신고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이 자녀의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한다.¹⁶⁰⁾ 우리 민법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924조), 미국의 대개의 주법은 관련 주기관이나 이해관계 있는 개인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¹⁶¹⁾

156)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계법의 연구, 426면.

157) 김유미, 현행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338면.

158) 자세한 것은 김유미, 현행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352면 이하 참고.

159) 김유미, 현행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354면.

160) 최진섭, 친권상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95-6면.

161) 최진섭, 친권상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401면.

친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친권의 일부박탈과 그 일부권리에 대한 후견인 선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학대나 유기원인이 된 사정을 개선시키고 이를 확인한 후 돌려보내야 하며, 그것이 안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¹⁶²⁾

또한 친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자녀의 복리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그 복리침해의 원인 제거를 위한 원조를 해 주어 친권자가 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도와주고, 원조로서도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의 상실선고 또는 자녀의 신상에 대한 양육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대신하는 법원의 명령을 내리고, 친권자에게 친권행사를 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위해가 될 경우에는 전면적인 박탈로서 친권상실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¹⁶³⁾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친권을 부분적으로 상실시키는 태도는 부모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친권을 전적으로 상실시킴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은 자녀양육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¹⁶⁴⁾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친권상실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친권상실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친가족의 통합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¹⁶⁵⁾ 2004년 말 현재 239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17,675명 시설아동들은 친권은 여전히 부모가 가진 채 아동이 성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친권의 부분적 박탈과 후견인 선임 즉, 친권자·후견인이 병행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전처분으로 친권상실의 선고를 하기 전에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하기 이전에도 친권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만 할 수 있는 점에서 친권남용의 상태에 있는 자녀의 보호에는 미흡하다.¹⁶⁶⁾

162)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계법의 연구, 427면 ; 최진섭,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113면; 김상용,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84면.

163) 김유미, 현행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349면.

164) 김상용,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84면.

165) 이해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93면.

166) 최진섭,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394면.

오늘날과 같이 친권의 후견성, 사회성을 강조하는 親權=親義務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오로지 자의 복리의 관점에서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에게 책임이 없는 때에도 친권의 상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친권자의 무책에 의한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친권상실신고 이외의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자녀의 복리침해가 친권자 자신의 가중노동에 의한 생활과괴, 빈곤 등 사회적 용인 등에 의한 경우에는 친권자가 올바르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함과 아울러 친권자에게 원조, 조언을 주는 것이 제2차적인 자녀양육 책임자로서의 국가의 임무이며, 특히 친권자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구조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대응하는 것도 생각할 만하다.¹⁶⁷⁾

친권상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와 동시에 후견 또는 입양 중에서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쪽을 법원이 판단하여 필요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고 단순히 친권상실의 신고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친권상실제도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¹⁶⁸⁾

미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친권상실신고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사전적(예비적) 부속절차와 친권상실신고의 본절차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⁶⁹⁾ 그리고 법원이 아동복지기관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기관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복지기관에 속해 있는 사회복

167) 김유미, 현행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342-3면. 친권의 남용에 유책성이 필요 없다는 견해로는 최진섭,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385면도 있다.

168) 최진섭, 친권상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95면.

169) 최진섭, 친권상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405면. 이를 위하여 최진섭교수는 민법 제924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한하였다(최진섭,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117면).

제924조(친권상실의 신고 등)에 대한 개정의견

- 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친권상실의 신고는 자의 복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법원은 자에게 긴급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친권자로부터 자의 격리,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친권상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친권자의 친권의 행사가 자의 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친권의 행사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친권의 행사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사가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¹⁷⁰⁾

그리고 친권을 상실하거나 사전처분을 받은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된다.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채택된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장 또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長은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당해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에 대하여 당해 아동과의 면회 또는 통신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본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아동의 권리성

(1) 문제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나 민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아동복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아동이 스스로의 양육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프랑스의 경우

미성년자와 관련있는 모든 소송에 있어서 법관 또는 법관이 지정한 사람은 변식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소송참가 또는 미성년자의 동의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못한다(제388조의1 제1항). 미성년자 자신이 의견청취를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이유 실시의 판결에 의하여만 그의 의견청취를 배척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 또는 미성년자가 지정한 사람과 함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의한 지정이 그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은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미성년자의 의견청취가 그에게 소송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동조 제3항).

170) 김상용,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87면.

소송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이익과 법정대리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견법관은 제389조의 3에 정한 조건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리할 특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후견법관이 없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담당법관이 이 지정권을 행사한다(제388조의2).¹⁷¹⁾

(3) 아동의 권리성 확보

2005년에 개정된 민법 제912조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에서는 친권의 행사와 더불어 친권자의 결정에서도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친권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후견인의 경우도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자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에서만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아동의 의사에 따라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⁷²⁾

참고로 일본 아동복지법상의 권리성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학대할 경우 그 보호자를 처벌하며, 아동의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고 가정재판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강제로 분리하여 국가가 보호하는 등 일련의 사회적 개입의 강제조치(동법 제28조 친권제한·분리보호, 아동학대방지법 제12조 면회·통신제한, 제15조 친권상실)를 취함으로써 아동의 양육을 경제적 지원은 물론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강한 의지를 입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인 청

171)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172) 현행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정재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정재산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여겨지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절차가 동법 제26조(아동상담소장의 조치관련 청문), 제33조의 4(조치행제 상유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청취의무) 외에 제46조(시설장 및 위탁부모의 아동양육상황 관련 청문) 등의 규정을 통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21조의3(지정 육성의료기관의 진료내용 및 진료보수에 대한 심사청구), 제59조의 4(도도부현의 업무처리에 대한 재심사청구), 제33조 7-8(법정후견인의 선임 및 해임관련 청구) 등의 이의신청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4. 전달체계

(1) 우리 법상 전달체계의 문제점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제4조의2), 이는 중앙정부 국무총리 소속 하에만 있어 그 심의·조정기능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다.¹⁷³⁾ 그리하여 아동복지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전달체계의 핵심인력인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 기준과 처우조건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학대아동보호사업의 정의에서 가해부모의 재학대를 예방하고 가족의 통합을 위한 상담과 치료가 제외되어 있으며, 장애아동복지시설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는 시설보호의 최저기준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21조의 시설의 개선·사업정지·폐쇄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복지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19조에서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처우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 아동복지법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아동복지심의회(제8-9조)는 심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에는 물론 도도부현(광역) 및 시정촌(기초)에도 설치되어 있어 행정단위별 상호연계는 물론 중앙 사회보장심의회와도 연계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심의·조정기능이 강화됨과 동시에 아동복지 급여와 사회보장제도 급여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있다. 요보호아동 신고의무, 비행아동 통고의무(제25조), 일시보호 신고의무(제30조), 일시보호

173)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88면.

기간의 제한(제33조), 친권제한·분리(제28조), 친권상실(제33조의 6), 가정재판소에의 송치(제27조의 3) 등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됨으로써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이 강화되었다.¹⁷⁴⁾ 그리고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아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사무소 내 아동가정상담실, 아동상담소, 보건소, 학교와 각종 시설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지역사회 요보호아동대책협의회를 구축하고 1개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¹⁷⁵⁾

(2) 가정법원의 역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방임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법원(family court) 또는 소년법원(juvenile court)에서 친권제한 및 박탈, 강제적인 서비스 명령, 즉각적인 격리명령 등을 내린다.¹⁷⁶⁾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¹⁷⁷⁾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변호사를 상주시켜서 가정법원을 통한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일본 아동상담소는 촉탁 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¹⁷⁸⁾

독일 개정친자법(das Kindschaftsreformgesetz, 1998. 7. 1 시행)에 의하면 자녀의 보호를 위한 개입과 법적 조치는 가정법원(Familiengericht)의 관할이다.¹⁷⁹⁾ 독일의 경우, 아동보호기관이나 교사, 의사, 친족, 이웃사람 등의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사안을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치를 취한다. 아동복지기관의 신고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KJHG) 제50조 제3항).

174)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80면.

175)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91면.

176)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164면.

177)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176면 ; 김상용, 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 85면.

178)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18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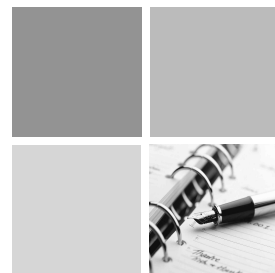
17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ünkel, Neue Zuständigkeiten des Familiengerichts, in: Schwab(Hrsg.), Das neue Familienrecht(1998), S. 499ff 와 BT-Drucksache 13/4899, S.71f. 참조; 김상용, 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 78면 주 8)에서 재인용.

5. 재정

우리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정부의 비용부담 조항은 없고, 비용보조조항(제31조)도 임의규정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아동부양수당, 한부모 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등 저소득층가정아동을 위한 아동부양수당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¹⁸⁰⁾ 아동복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일본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2 내지 제56조의5에 규정된 각종 아동복지행정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무자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도도부현·시정촌 등의 부담비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80)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188면.

제 6 장 아동양육기본법에 포함될 내용



제 6 장 아동양육기본법에 포함될 내용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입법의 형식을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또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¹⁸¹⁾ 또한 기본법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절차적인 규정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또는 가사소송법에 특례를 두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본적인 내용

우선 아동에 대한 양육의무는 1차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짐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의 규정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여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출산과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저출산의 경우에도 자녀의 출산 후 모의 사회활동이 제한된다는 자녀의 양육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자력이 부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후원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⁸²⁾

181) 김재경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을 일반법으로 보아 만든 것 같지만 법무부는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182) 저출산의 경우나 위탁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문제 이외에 자녀의 필요성이나

2. 임신·출산에 관한 규정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부모가 당연히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국가도 태아에 대한 검진 등을 통하여 임신을 장려하고 임신중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가진 법률로는 모자보건법이 있는데,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출산 후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보육과 관련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⁸³⁾

3. 생활안정을 위한 규정

자녀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부모에게 직접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취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¹⁸⁴⁾ 그렇지만 부모의 자력에 의한 자녀의 부양이 곤란하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부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계를 지원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또한 생활안정을 위한 규정에서는 연령에 따른 보호도 필요할 것이지만(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아동의 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하나의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부모의 이혼인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가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한다.¹⁸⁵⁾ 이와 함께 현재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

아동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83) 저출산·고령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함께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용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184) 미국의 경우에도 자녀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자세한 규정과 함께 부모로 하여금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185) 부모의 이혼에 관하여는 민법의 이혼에 관한 규정이나 이혼절차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혼에 부수하여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의 문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선연적인 규정을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는 김재경의원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나 법무부안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강제이행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절차 중에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양육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또는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양육자의 결정이나 양육비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¹⁸⁶⁾

또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결정된 양육비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무부안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거나 또는 한명숙의원안과 같이 장래의 채권에 대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김재경의원안과 같이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⁸⁷⁾

4. 교육에 관한 규정

교육에 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아의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나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교육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¹⁸⁸⁾ 그리고 의무교육 이외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단계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사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¹⁸⁹⁾ 다만 교육에 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

186)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예를 들어 독일에서의 뒤셀도르프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187) 양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가장 실효성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양육의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할 가능성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188) 특히 교육부가 예고한 바와 같이 만 5세부터 만 6세에 이르는 아동이 선택적으로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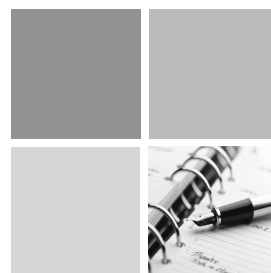
법에서는 선언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5. 장애인에 관한 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 및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 관한 규정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선언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189) 다만 사교육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공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예를 들어 학습부진아에 대한 보충수업 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제 7 장 결 론



제 7 장 결 론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문화관광부에서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개별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내용의 중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을 정리·종합하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부양법과 같은 단일한 법률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의 형태로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일이 많아 주무부서 외에 다른 정부부처와의 합동으로 (또는 파견근무 등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의 제언을 덧붙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장의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양육 내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의 지출은 각 부처별로 집행되며 따라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전체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 내지 가족관련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녀의 양육이 가족의 몫이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지녀온 것이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대체로 모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부모의 역할이 서로 공유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장되는 제도가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파파쿼터제)이다. 파파쿼터제는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기간을 배우자에게 할당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함으로서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¹⁹⁰⁾ 파파쿼터제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문화적, 의식적 차원에서는 물론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가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서 찾는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아동의 양육이 모만의 책임이 아닌 가족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90) 장혜경, 저출산과 가족정책, 한국가족법학회 2006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24면.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제1조는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은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한 것으로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단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아동을 보호·교양할 의무가 있거나 현재 아동을 보호·교양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교양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6. ‘양육비’라 함은 미성년자녀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피양육자’라 함은 부모로부터 보호·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미성년자녀를 말한다.
8. ‘양육의무자’라 함은 미성년자녀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말한다.

<해설> 제2조는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이며, 아동복지법과 김재경의원의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참고하였다.

제3조[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

- ① 부모는 그 자녀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부모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해설>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환경이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이므로, 일단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의 양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현행법상 아동의 양육에 관한 규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 이외에도 건강가정기본법 등 많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해 나가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에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규정은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장 기 구

제5조[아동양육정책위원회]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양육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아동양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동의 양육을 위한 정책의 방향설정
2. 아동양육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운용
3. 아동정책의 운용을 위한 예산의 지원
4.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협조
5. 아동양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동 양육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나 과반수의 위원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⁹¹⁾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주된 책임은 여성가족부가 져야 하지만 다른 부처와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것으로 하였다.

제6조[아동양육지원센터] ① 부모에 의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지원센터를 둔다.

- ② 중앙에는 중앙아동양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는 지방아동양육지원센터를 둔다.
- ③ 아동양육지원센터는 아동양육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및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 ④ 아동양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해설> 아동양육지원센터는 아동양육에 관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이며,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미 아동양육과 관련된 많은 기구와 단체들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화원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2005. 10. 18. 의안번호 172967)에서도 아동양육에 관한 기구들의 연합체를 구상하고 있다.

191) 아동의 양육에 관한 업무내용만을 고려대상으로 한다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동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그밖에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7조[아동복지사] 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지원센터에 아동복지사를 둔다.

② 아동복지사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거나 감독한다.

<해설> 보호자에 의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거나 감독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담당할 인원으로 아동복지사를 둔다(명칭은 변경가능함). 아동복지사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거나 아동의 양육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보육시설이나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후견인의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3 장 아동양육

제8조[양육권] 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부모 이외의 보호자에 의하여 양육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② 아동이 보호자에 의하여 양육되는 경우 보호자는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아동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지며, 보호자에 의하여 양육되지 않는 아동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해설> 아동의 양육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이 부모 및 보호자에게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육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나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조[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에 대하여 자녀양육태도나 방법 등에 관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제공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을 정한다.

<해설> 대가족제도하에서는 가족간에 자녀양육 등에 관하여 서로 교육할 기회가 있지만, 핵가족이 대부분인 현재에는 가족에 의한 자녀양육방법의 교육이나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아동에 대한 양육 중 예방주사 등은 보건당국에 의하여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지만,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양육이 대부분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가 가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양육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제10조[아동학대의 금지] ① 부모는 자신이 양육하는 아동을 확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한 때에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미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제11조[친권의 제한] ①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 또는 모, 자녀 본인, 4촌 이내의 친족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친권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친권을 제한하는 경우 자녀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자와 격리하거나 친권자와 격리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감독을 받게 할 수 있다.
- ③ 제3자의 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¹⁹²⁾ 현행법상으로는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¹⁹²⁾ 따라서 친권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감독은 사회복지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자의 선임] 가정법원이 친권의 제한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위하여 보호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현행 민법을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는 보호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친권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민법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제13조[자녀의 격리] ① 친권자에 의하여 자녀학대가 가해진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아동복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자녀의 격리를 명할 수 있다.

② 친권자로부터 자녀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을 이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아동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보호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해설> 자녀를 격리한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민법상의 후견인과 같은 지위에 두어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친권자와 격리된 자녀를 다른 가정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아직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전교

192) 2006. 9. 27. 법률 제8006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이 규정은 2007. 3. 28.부터 시행>

193) 가사소송법상 친권상실선고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친권의 제한에 관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녀격리에 관하여는 프랑스민법 제375조 이하(본문의 프랑스법 관련 부분) 참고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자녀를 격리한 경우에도 친권자는 자녀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친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구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자녀를 격리한 경우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통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만 양육자나 국가가 양육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부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자녀격리의 제한] 부모로부터 자녀를 격리하는 것은 가정법원이 결정을 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부모로부터 자녀를 장기간 격리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자녀의 격리기간을 정해 됨으로서 부모의 친권을 회복하는 절차를 취하거나 또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위탁가정의 지정] 친권자로부터 격리된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의 지정이나 관리 등은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행한다.

<해설> 친권자로부터 격리된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7조[아동보육기관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보육기관을 친권자로부터 격리된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동보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보육시설의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된 영유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보호시설에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가정위탁제도를 이용하거나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미리 아동보육시설 중 부모로부터 격리된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18조[아동복지시설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수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해설> 아동복지시설도 아동복지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양육을 위한 기본법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⁹⁴⁾

제19조[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① 아동을 친권자로부터 격리하여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보육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아동의 양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친권자로부터 격리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위탁된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194)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보육원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대상아동이 있는 가구의 수를 기준으로 보육원 등 탁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용에 상당한 금액이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령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아동수당의 지급

제20조[아동수당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이 부모의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적인 책임임을 대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아직 아동수당을 도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일본의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한정하여 시행하면서 점차 그 적용대상을 늘여가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재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수당과 양육비의 대지급은 구체적인 절차를 반영하여 각각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1조[지급요건] 아동수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1. 3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이하 지급요건아동이라 한다)을 감호하고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2. 부모에 의하여 감호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지급요건아동을 감호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지급요건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그 생계를 유지하는 자

<해설> 아동수당을 지급할 대상을 3세 이하의 아동으로 정하고, 이들을 실제로 보호·감호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초기에는 3세 정도로 시작하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후 점차 늘여가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2조[아동수당의 액수] ① 아동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급요건아동 1인에 대한 수당의 액수는 10만원으로 한다.

② 지급요건아동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가산할 수 있다.

<해설> 아동수당의 지급주기는 월 단위로 하고, 지급액은 잠정적으로 매월 10만원으로 하였다. 다만 지급대상 아동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산인 가정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3조[아동수당의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이 출생한 달의 익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해설> 아동수당은 3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지만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출생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즉 만 3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위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액 상당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아동수당을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지급받은 자에게서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제25조[수급권의 보호]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제 5 장 양육비대지급

제26조[양육의무자의 양육비지급의무] ①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②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설> 양육비의 지급이 양육의무자인 부모의 책임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는 경우 부모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27조[양육비 청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아동 또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이하 ‘양육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심판청구절차, 법률사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양육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설> 양육자가 양육의무자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절차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은 아동양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는 전제에서 아동양육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제28조[양육비의 대지급] 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양육비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자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아동은 부 또는 모 일방과 동거하거나 위탁가정에 위탁된 자로 15세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양육비의 대지급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를 의미한다. 물론 이 경우 대지급한 양육비를 구상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재정적 부담이 문제된다. 그렇지만 아동수당과 함께 아동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에 대지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양육비의 대지급에 관하여는 김재경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¹⁹⁵⁾ 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는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29조[대지급의 결정 및 실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요건을 심사한 후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의 대지급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의 요지, 대지급되는 양육비 액수 및 대지급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양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육비의 대지급은 대지급 결정일부터 지급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12월로 한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한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지급되는 양육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구체적인 대지급액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기본적인 절차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양육비를 대지급하는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데, 일단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하여금 자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1년 내지 1년 6개월의 제한을 두었다. 다만 양

195) 이하의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규정은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제3장 양육비대지급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육의무자에 의한 양육비의 지급의무의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에 양육비의 대지급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반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제30조[대지급의 중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게 된 때에는 양육비의 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양육자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양육비채무 이행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양육비의 대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대지급이 필요없게 되므로 양육비의 대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육비지급과 관련된 사실 관계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양육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였다.

제31조[대지급된 양육비의 반환의무] ① 양육자는 고의나 과실로 양육비 대지급의 요건에 관하여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지급된 양육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양육비채무이행 이후 대지급 받은 양육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육비의 반환이 아동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반환의무를 감경할 수 있다.

<해설> 양육자의 고의나 과실로 양육비를 대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양육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령한 양육비를 아동을 위하여 소비한 경우 수령한 양육비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양육자나 아동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2조[구상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 안에서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양육

비지급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양육의무자로 하여금 재산에 관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을 조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¹⁹⁶⁾

③ 대지급된 양육비의 구상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절차를 준용한다.

<해설>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양육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구상권의 행사에는 국세징수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제33조[권리의 보호]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양육비를 대지급 받을 권리는 반드시 아동 본인이나 양육자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양육자의 다른 재산과 분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령받은 금전 등을 다른 재산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만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34조[비용부담]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96)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은 현행법이 아니며, 법무부 민법개정안이다.

제48조의2(재산명시) ①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에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재산명시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기관을 아동복지지원센터로 한다면 그 비용은 여성가족부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녀에 대한 학대를 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자녀의 격리에 동의하지 않은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자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양육비를 대지급받은 자
- ② 아동수당이나 양육비를 지급받은 자가 제1항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아동수당이나 양육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문 헌>

- 명순구역,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 강현중,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입양, 사법논집 제12집, 1981.
- 권영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제11집, 2003
- 권정희 아동복지를 위한 가족관계법의 내용과 과제, 가족법 연구 제8호
- 기광도, 가정환경과 비행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61호, 2000.
- 김상용,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고시연구 1999. 6.
- 김순미, 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및 위탁교육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1997.
- 김운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고찰, 실무연구 제8권, 2002.
- 김유미, 과거의 양육비 청구, 판례연구 제35권, 1994.
- 김유미,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우리 민사법, 비교사법 제9권, 2002.
-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10호,
- 김유미, 현행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가족법연구 제11호, 1997,
- 김재연,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사건, 실무연구 제9권, 2006.
- 김철자, 영국에서의 이혼 후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 아세아여성법학 창간호, 1998.
-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제1호, 1996.
- 김현정, 이혼 시 자녀양육비 판정의 문제점과 합리적 지침방향 제시, 소비자학연구 제12권, 2001.
- 김현정, 자녀 양육비 결정요인 및 영향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문숙재, 자녀 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1995.
- 박복순,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민사법연구 제12집, 2004.
- 박정선, 영국·미국·독일의 아동보육정책의 형성과 발달 현황, 연세사회복지연구, 1998.
- 박희정,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한 법적 고찰-양육비 청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성정현, 재판이혼 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제18호, 2001.

- 원혜옥,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아세아여성법학 제5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2, 251-252면
- 이 립, 이혼부부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판례자료: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제101집, 2003.
- 이성림,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2002.
- 이영애, 이혼과 자녀양육, 재판자료 제18집, 1983.
- 이원재, 이혼 후의 자녀양육, 노동법률 제103호, 1999.
-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한국 사회복지학회
- 이호균,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0권 1호, 2006
- 이화숙, 부모의 자녀양육비지급책임, 사법행정, 1994.
- 장성원, 양육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판결주문의 형식, 법률신문 2063호, 1991.
- 정순희, 가족구성원간 소득분배 :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측정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학 연구 제7권, 1996.
- 정순희, 이혼 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원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제13권, 1999.
- 조미경, 영국법상 아동보호, 가족법연구 제9호, 1994.
- 차선자, 자녀복리를 중심으로 개정된 독일의 친자관계법 - 구법과 비료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17호, 2003.
- 최진섭, 이혼 후의 공동양육, 가족법학논집 제1호, 1991.
- 최진섭, 이혼배우자의 자녀양육에 관한 법제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최진섭,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청구와 그 인부의 기준, 판례월보 274호, 1991.
- 최진섭, 재혼 부모의 사망 및 이혼에 따른 자녀보호의 법적 문제점, 가족법연구 제11호, 1997.
- 최진섭,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 최진섭, 친권상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가족법연구 제10호
- 한창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상환청구, 국민과 사법, 1999.
- 허경옥,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 -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제8권, 1997.
- 허경옥, 편모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출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6권, 1995.

홍승욱, 이혼과 자의 양육, 실무연구 제5권,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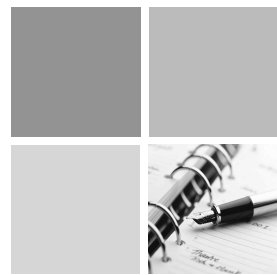
홍준의, 현대 프랑스 친자법과 친권법의 발전과 동향, 가족법연구 제13호.

황성기,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가

나



<부록> 일본 아동수당법 번역문

아동수당법의 개요

1. 제정경위

아동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 남은 마지막 사회보장제도분야로서, 일찍부터 그 창설이 주장되어 왔다. 후생성에서는 각종 심의회로부터 창설에 대한 의견 등을 받아 昭和 44년에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아동수당심의회를 설치하였다. 동 심의회는 昭和 45년 9월 아동수당제도의 대체적인 내용을 답신하였다.

후생성은 이를 토대로 정부안 책정에 착수하였으며, 여러 논의를 거친 후 아동수당법을 昭和 46년 2월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법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전회 일치로써 가결됨에 따라, 昭和 46년 5월 21일에 성립되고, 昭和 4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처음 이 제도는 의무교육종료 전 셋째 자녀 이후의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하였으나, 昭和 60년의 개정에 의해 의무교육취학 전의 둘째 자녀 이후의 아동이 지급대상으로 되었고, 平成 3년 개정으로 지급대상은 첫째 자녀에까지 확대되고, 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후 平成 6년 개정에서는 아동육성사업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平成 12년 개정에서는 3세 이상 의무교육취학 전의 아동에게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특례급부를 창설하였는데, 이것은 平成 16년 개정에서 소학교 3학년 수료 전까지로 연장되었다.

2. 법의 취지·목적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이는 소득보장과 건전육성·자질의 향상 이외의 시책, 예컨대 인구정책, 임금정책, 고용정책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3. 법의 개요

아동수당법은 총칙, 아동수당의 지급, 비용 및 잡칙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목적 등

이 법의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수급자는 아동수당을 이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제2조).

(2) 지급요건

「아동」이란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연령에 있는 자를 말한다(제3조).

아동수당은 일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3세 미만의 아동을 감호하고 생계를 유지(수급자가父 또는 母인 경우 생계동일을 요건으로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된다(제4조).

또한 전년도(1월부터 5월까지의 아동수당은 전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제5조).

(3) 아동수당의 액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는 월 5천엔,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인당 1만엔이 지급된다(제6조).

(4) 아동수당의 지급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市町村長의 認定을 받아야 한다. 주소가 바뀐 경우, 아동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7조 및 제9조).

아동수당은 인정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지불하는 달은 2월, 6월, 10월이며, 각각 그 이전 달의 수당을 포함한 아동수당이 지불된다(제8조).

수급자는 매년 6월 1일에 현황을 市町村長에게 신고해야 한다(제26조). 현황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市町村長의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분의 정지, 지급의 제한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1조 및 제27조).

또,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인정권자는 소속청의 장으로서, 인정절차는 소속청의 장에게 하면 소속청의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제17조).

(5) 비용의 부담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제18조).

- ① 피용자(후생연금보험 적용사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자, 사립학교교직원 공제제도 가입자 및 공제조합직원 및 공무원 직원단체 등의 직원을 말한다.)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사업주 10분의 7, 국가 10분의 2, 都道府縣 10분의 0.5, 市町村 10분의 0.5
- ② 피용자가 아닌 자(피용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국가 6분의 4, 都道府縣 6분의 1, 市町村 6분의 1
- ③ 공무원……소속청 10분의 10

정부는 사업주(피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피용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및 아동육성사업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징수한다(제20조). 부담금 비율은 매년도 피용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예상총액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액을 해당 년도의 부과표준 예상총액을 공제하여 얻은 비율에 아동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 제1항의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예정액을 해당 년도의 부과표준 예상총액으로 공제하고 얻은 비율을 더하여 얻은 것을 기준으로 각령에서 정한다(제21조).

(6) 아동육성사업의 실시

정부는 아동수당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동육성사업(육아에 필요한 원조를 하거나 아동의 건강증진 혹은 정서를 함양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조성 및 원조하

는 사업 또는 기타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제29조의 2).

(7) 기타

아동수당의 지급을 받을 권리,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23조).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처분 및 징수금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제25조).

4. 아동수당의 특례급부에 대해

(1)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특례급부

당분간 소득제한을 이유로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피용자 또는 공무원으로서, 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중 각령에서 정하는 일정소득 미만의 자에 대해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특례급부를 할 것(부칙 제6조).

(2) 3세 이상 소학교 3학년 수료 전의 아동에 관한 특례급부

당분간 3세 이상 소학교 3학년 수료 전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 대해 3세 미만의 경우와 동일한 금액 및 소득제한에 의한 금액 전액을 공비부담(국가 6분의 4, 都道府縣 6분의 1, 市町村 6분의 1)으로 특례급부를 행할 것(부칙 제7조 및 제8조).

아동수당법

(昭和 46. 5. 27. 법률 제73호)

개정

昭和 49년 법률 제89호 · 昭和 50년 법률 제47호 · 昭和 53년 법률 제46호 · 昭和 54년 법률 제36호 · 昭和 56년 법률 제50호 · 제73호 · 제86호 · 昭和 58년 법률 제82년 · 昭和 59년 법률 제71호 · 제87호 · 昭和 60년 법률 제34호 · 제74호 · 제97호 · 제105호 · 제107

호·제108호·昭和 61년 법률 제93호·平成 3년 법률 제54호·제102호·平成 6년 법률 제18호·平成 8년 법률 제82호·平成 9년 법률 제48호·平成 11년 법률 제87호·제104호·제160호·平成 12년 법률 제18호·제84호·平成 13년 법률 제101호·平成 14년 법률 제98호·平成 15년 법률 제119호·平成 16년 법률 제21호·제104호·제10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에 있어서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자의 책무) 아동수당의 지급을 받는 자는 아동수당이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아동」이란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연령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말하는 「父」에는 모가 아동을 임신할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모와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제 2 장 아동수당의 지급

제4조(지급요건) ① 아동수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일본국내에 주소리를 두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1. 다음 가 또는 나에서 드는 아동(이하 「지급요건아동」이라 한다.)을 감호하고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 가. 3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월의 초일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않은 아동으로 본다. 이하 같다.)
 - 나. 3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을 포함하는 2인 이상의 아동
2. 부모가 감호하지 않거나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지급요건아동을 감호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아동을 감호하고 또한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로서 부모가 감호하지

않거나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아동을 감호하고 또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단, 이들 아동이 지급요건아동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부와 모가 함께 그들의 자인 아동을 감호하고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은 부 또는 모 중 아동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쪽에 의해 감호되고 또한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① 아동수당은 전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년도 소득(1월부터 5월까지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한다.)이 소득세법(昭和 48년 법률 제3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친족(이하 「부양친족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부양친족 등이 아닌 아동으로서 동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의 12월 31일 당시 생계를 유지한 자가 있었는지 유무 및 그 수에 따라, 각령에서 정하는 액수 이상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범위 및 그 액수의 계산방법은 각령에서 정한다.197)

제6조(아동수당의 액수) ① 아동수당은 월을 단위로 지급하며, 그 액수는 매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서 규정하는 액수로 지급한다.

1. 아동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에 속한 지급요건 아동 모두가 3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인 경우, 다음의 ㄱ 또는 ㄴ의 구분에 따라 각각 ㄱ 또는 ㄴ에서 규정하는 금액

ㄱ. 해당 3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이 1인 또는 2인인 경우

5천엔에 해당 3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의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ㄴ. 해당 3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이 3인 이상인 경우

1만엔에 해당 3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의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1만엔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

2. 수급자격자에 속하는 지급요건아동 중 3세 이상의 아동(월의 초일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아동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ㄱ 또는 ㄴ에서 규정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ㄱ 또는 ㄴ에서 규정하는 금액

ㄱ. 해당 3세 이상의 아동이 1인인 경우

1만엔에 해당 지급요건아동 중 3세에 달하지 않은 아동의 수를 곱하여 얻은 금

197) 제1항의 「각령」=령 제1조 제2항의 「각령」=령 제2조·제3조 「공제대상배우자」=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3호·제83조 「부양친족」=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제84조

액에서 5천엔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

㉑. 해당 3세 이상의 아동이 2인 이상인 경우

1만엔에 해당 지급요건아동 중 3세에 달하지 않는 아동의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② 전항의 금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기타 제반 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후의 제반 사정에 맞도록 즉시 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인정) ① 수급자격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받으려면 그 수급자격 및 아동수당액에 대해 주소지 市町村長(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른 市町村(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역 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 후 기간 동안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동항과 같다.¹⁹⁸⁾

제8조(지급 및 지불) ① 市町村長은 전조의 인정을 한 수급자격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아동수당의 지급은 수급자격자가 전조 규정의 인정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실시하되,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③ 수급자격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 주소를 변경한 후 및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후 15일 이내에 청구를 한 때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주소를 변경한 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인정청구를 할 수 없었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실시한다.

④ 아동수당은 매년 2월, 6월, 10월, 3기마다 각각 전월까지의 금액을 지급한다. 단, 이전 지불기에 지불하지 못한 아동수당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해당 기의 아동수당은 그 지불기에 해당하는 달이 아니더라도 지불하도록 한다.

제9조(아동수당액수의 改定) ① 아동수당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의 아동수당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아동수당금액의 개정은 그 자가 개정 후 금액에 대한 인정청구를 한 날 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실시한다.

②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개정에 준용한다.

③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의 아동수당금액의 개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실시한다.¹⁹⁹⁾

198) 「인정」의 청구절차=규칙 제1조

제10조(지급의 제한) 아동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직원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26조가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때에는 아동수당의 지불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미지불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수당으로 아직 그 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수당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감호 하에 있었던 지급요건아동이었던 자에게 그 미지불의 아동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²⁰⁰⁾

제13조(지불의 조정)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으로서 지불된 때는 그 지불된 아동수당은 나중에 지불해야 할 아동수당의 선지급(내불)으로 볼 수 있다. 아동수당금액을 감액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이후의 수당으로 감액하지 않는 금액의 아동수당이 지불된 경우의 감액대상 아동수당부분도 이와 같다.

제14조(不正利得의 징수) 위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市町村長은 수급액 상당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급권의 보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할 수 없다.

제16조(제세공과의 금지) 조세 기타 제세공과는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

제17조(공무원에 관한 특례) ① 아래표의 윗란에 규정한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7조 제1항의 「주소지의 市町村長(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조 제1항 및 제14조의 「市町村長」은 각각 이 표 아랫란에서 규정하는 자로 한다.

199) 「개정」의 청구절차=규칙 제2조 「개정」의 신고 =규칙 제3조

200) 「미지불 아동수당」의 청구절차=규칙 제9조

1. 상시근무를 요하는 국가공무원 및 기타 각령에서 정하는 국가공무원(독립행정법인통칙법(平成 11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독립행정법인 또는 일본우정공사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상시근무를 요하는 지방공무원 및 기타 각령에서 정하는 지방공무원(지방독립행정법인법(平成 15년 법률 제118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각 省 각 廳(재정법(昭和 22년 법률 제34호)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각 省 각 廳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長(재판소의 경우 최고재판소장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해당 지방공무원이 소속된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市町村立 학교직원급여부담법(昭和 23년 법률 제135호) 제1조 또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都道府縣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 ② 제7조 제2항 규정은 인정권자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인 경우, 동조 제 1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한 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의해 인정권자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되는 경우, 제7조 제 1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8조 제3항 중 「주소를 변경한」이라는 부분은 「그 인정한 자를 달리하는 경우」로 한다.²⁰¹⁾

제 3 장 비 용

- 제18조(아동수당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① 피용자(제2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보험료 또는 부금을 부담하거나 또는 납부의무를 지는 피보험자, 가입자, 조합원 또는 단체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그 10분의 7 상당의 금액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10분의 2 상당의 금액은 국고가 부담하며, 그 외 10분의 0.5 상당의 금액을 都道府縣 및 市町村이 각각 부담한다.
- ② 피용자 등이 아닌 자(피용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6분의 4 상당의 금액을 국고가 부담하고, 6분의 1 상당의 금액을 都道府縣 및 市町村이 각각 부담한다.
- ③ 아래에서 규정하는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각각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201) 제1항의 「각령」=령 제4조

자가 부담한다.

1. 각 省, 각 廳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7조의 인정(이하 이 항에서 「인정」이라고만 한다.)을 한 국가공무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 국가
2. 都道府縣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정을 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 해당 都道府縣
3. 市町村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정을 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 해당 市町村
- ④ 국고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에 관한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市町村長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인정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그 해 또는 익년의 5월까지 기간 동안(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해의 6월부터 익년 5월까지의 기간)은 그 인정청구를 한 당시(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를 한 자는 6월 1일)의 피용자 또는 피용자 등이 아닌 자의 구분에 따른다.²⁰²⁾

제19조(市町村에 대한 교부) 정부는 각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市町村에게 市町村長이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급할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중 피용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용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교부한다.²⁰³⁾

제20조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① 정부는 피용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및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아동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에서 규정하는 자(이하 「일반사업주」라 한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1. 후생연금보험법(昭和 29년 법률 제115호) 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
2.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昭和 28년 법률 제245호)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 등
3.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昭和 37년 법률 제152호) 제14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202) 국고의 부담=지방재정법 제10조 제15항

203) 제1항의 「각령」=령 제5조

단체 및 기타 동법에서 규정하는 단체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자

4.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昭和 33년 법률 제128호) 제1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합회 및 동법에서 규정하는 단체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자²⁰⁴⁾

② 일반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1조(부담금액) ① 부담액은 아래 표의 윗란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보험료 또는 부금이 계산의 기초가 된, 동표의 중간란에서 열거하는 금액 및 동표의 아랫란에서 규정하는 금액 {육아휴업·개호휴업등육아또는가족개호를행하는노동자의복지에 관한법률(平成 3년 법률 제76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업 혹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육아휴업제도에 준하는 조치에 따른 휴업 및 국가공무원의육아휴업등에 관한법률(平成 3년 법률 제109호)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업 또는 지방공무원의육아휴업등에관한법률(平成 3년 법률 제110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업을 하고 있는 피용자에 대해 그 육아휴업 또는 휴업을 함에 따라 동표의 윗란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기초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부금을 면제, 징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피용자에 관련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표준」이라 한다} 에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의 총액을 그 부담금으로 한다.

후생연금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공제법	농림어업단체 직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등 공제조합법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법
표준보수월액	표준급여의 월액	표준급여의 월액	급료의 액	표준보수의 월액
표준상여액	표준상여의 액	표준상여액	기말 수당 등의 액	표준기말 수당 등의 액

② 전항의 부담금 비율은 매년도 피용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예상총액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해 부과표준 예상총액을 공제하여 얻은 비율에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아동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전조 제1항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금액의 예정액을 그 해의 부과표준 예상총액을 공제하고 얻은 비율(다음 항에서 「사업비충당액상당률」이라 한다.)을 더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각령에서 정한다.

③ 매년도 사업비충당액상당률은 그 해의 전년도 사업비충당액상당률을 표준으로 하여, 이전 5년도의 매 해 사업비충당액상당률을 감안해서 산정하여야 한다.²⁰⁵⁾

204) 제1항 제3호의 「각령」=령 제6조 제1항, 제4호의 「각령」=령 제6조 제2항

205) 「각령」=平成 16년 각령 제158조(平成 16년도의 아동수당법에 기초하여 일반사업주로부터 징수하

- 제22조(부담금의 징수방법) ① 부담금 기타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및 기타의 징수금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
- ② 전항의 부담금 및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정부의 권한으로서 각령에서 정하는 권한은 사회보험청장관이 행사한다.
- ③ 정부는 부담금 및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업을, 그 부담금 및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 편의를 가지는 법인으로서 각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의 징수 및 정부에의 납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각령에서 정한다.²⁰⁶⁾

제 4 장 雜 則

- 제23조(시효)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권리 및 부담금 기타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②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③ 부담금 및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의 납입고지 또는 독촉은 민법(明治 29년 법률 제89호) 제1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²⁰⁷⁾
- 제24조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한 명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²⁰⁸⁾
- 제25조(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처분 또는 부담금 및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수금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 또는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는 부담금에 관한 부담금 비율을 정하는 각령)

- 206) 제2항의 「각령」=령 제7조 제3항의 「각령」=령 제8조 제4항의 「각령」=령 제 9조 「정부에의 납부」절차의 특례=昭和 46년 大令 제77조(아동수당법에 근거한 부담금 등의 납부절차의 특례에 관한 각령)
- 207) 「시효」=민법 제144조~제174조의 2 「불복신청」=행불 제3조~제6조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47조·제149조 관련규정=자치법 제236조
- 208) 「기간의 계산」=민법 제139조~제143조

없다.²⁰⁹⁾

제26조(신고) ①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市町村長에게 전년도 소득상황 및 그 해 6월 1일 당시 피용자 또는 피용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해당 여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市町村長(제17조 제1항에 의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인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후생 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하며, 또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²¹⁰⁾

제27조(조사) 市町村長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해 수급자격의 유무, 아동수당금액 및 피용자 또는 피용자 등이 아닌 자의 해당 여부 등의 사항에 관한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들 사항에 관해 수급자격자 및 기타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질문을 행하는 해당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 하여야 하고, 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때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²¹¹⁾

제28조(자료의 제시 등) 市町村長은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자산 또는 수입상황에 대해 우편국 및 기타 관공서에 대해 필요한 서류의 열람 혹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은행, 신탁회사 기타 기관 혹은 수급자격자의 고용주 및 기타 관계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7조의 인정을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상황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²¹²⁾

제29조의2(아동육성사업) 정부는 아동수당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동육성사업(육아에 필요한 원조를 하거나 아동의 건강증진 혹은 정서를 함양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조성 및 원조하는 사업 또는 기타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는 자를 말한다.)을 할 수 있다.

209) 「처분의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항·제8조 「심사청구」=행불 제3조~제5조 「재결」=행불 제40조·제42조 「이의신청」=행불 제3조·제4조·제6조 「결정」=행불 제47조

210)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규칙 제4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규칙 제3조·제5조~제8조·제11조

211)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규칙 제13조

212) 「후생노동성령」=규칙 제14조

제29조의3(사업의 구분) 이 법률(제29조를 제외한다.) 규정에 따라 市町村이 처리해야 하는 사무(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이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포함한다.)는 지방자치법(昭和 22년 법률 제67호)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본다.

제30조(실시명령)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및 그 집행에 대해 필요한 세칙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다.『후생노동성령』=昭和 46년 후생노동성령 제33조(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1조(벌칙) 위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형법(明治 40년 법률 제 45호)에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는 형법에 따른다.

※ 번역에 따른 참고사항

1. 가능한 한 일본에서 사용하는 고유 법률명칭 및 행정관서나 지명은 그대로 사용.
2. 각조항 제목을 원본대로 조문 앞에 배치.
3. ‘政令’은 ‘閣令’으로 번역하였음.²¹³⁾
4. *표시부분에 기재된 법률은 모두 약자로 표기되어 있어, 이 중 모르는 법률은 약자 그대로 번역하였으며, 조문 및 항, 호를 표시할 때 한자,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등을 병기하고 있는데, 대략 한자로 표시된 것은 조문을, 아라비아 숫자로 된 것은 항을, 로마자로 표시된 것은 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그에 따라 표시.
5. 년도 표시에 있어 昭和는 표시된 숫자에 25를 더하고, 平成은 88을 더하면 됨.
6. 부칙은 번역을 하지 못했음.
7. 번역한 자료 원본은 兒童福祉六法(兒童福祉法規研究會 監修, 平成 17年 版, 中央法規), 1305 - 1313면.

213) 각령 ;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법률 아래에 있는 최상위 명령.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 국무원령.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아동관련법률안>

▷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저출산 시대의 도래 및 주 5일 수업제 실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과 후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방과 후 부모의 맞벌이나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비행이나 범죄에서 보호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 등을 방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활동 격차를 보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책무로 판단됨.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 후 학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방과 후 활동”,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정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다. 지방의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1조).

- 라. 국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14조, 제15조).
- 마.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에 이 법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시설을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시설로 활용함(안 제17조).
- 바. 각 시설의 장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함(안 제18조).
-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있음(안 제20조).

•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학령기 아동·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성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교육과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시간”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의

한 학교의 수업 이외의 시간 및 휴업일을 말한다.

2. “학령기 아동·청소년”이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모든 자를 말한다.
3. “보호와 교육 지원”이라 함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활용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 활용시설”이라 함은 제17조에 정한 시설(이하 “보호와 교육 지원 활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학령기 아동의 권리와 의무) ①학령기 아동·청소년은 생존·주거·문화·참여·복지권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 확고히 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를 가진다.

②학령기 아동·청소년은 자기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개인·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은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위원회

제8조(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주요시책 등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 방향의 설정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의 조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5.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활용시설 종사자의 자격·임무·처우 등에 관한 사항
6. 보호와 교육 지원 활용시설에서 제공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프로그램의 기준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청소년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

1.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활동 관련 분야 전문가
2.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활용시설 및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3. 학부모단체·아동 및 청소년단체·시민사회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⑥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처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국가청소년위원회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조(지역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한다)를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지역교육감, 지역 아동·청소년 담당공무원,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보호와 교육 지원 활용시설 대표, 아동·청소년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 ③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센터 설치 등) ①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중앙정보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보센터 및 지역정보센터는 정보센터의 장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요원 등을 둔다.

- ③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정보센터의 장과 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 등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
 - 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 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공동체성과 창의성, 자율성 신장
 - 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 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민주적이고 복지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삶을 위한 자질 향상
 2.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협조 사항
 4. 「예산회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14조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총괄·조정한다.
-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교육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2 이상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 및 교육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공기관·관련 단체의 장,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교육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공기관·관련단체의 장,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 4 장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시설의 운영 등

제17조(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시설) ①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시설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련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 중 해당 법률의 고유목적 이외에 제1조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련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18조(보호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각 시설의 장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와 교육 지원 활용시설의 장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응급조치·치료·예방조치·급식 관리·교육 및 안전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의 분석 및 평가 등) ①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지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미비점이 많아 아동학대 예방사업 수행 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들은 학대의 굴레에 방치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부모의 빈곤상황이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체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권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법·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개인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사회적으로는 폭력의 악순환 현상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명들게 하는 아동학대 및 방임행위를 방지하고 우리사회의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아동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외상의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신체학대 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보호자가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학교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전

- 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바. 피해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학대 및 방임한 보호자에 대하여 피해아동과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6조).
- 아.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
- 자. 국가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의 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 긴급전화의 운영 등을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고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육성에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를 말한다.
4. “아동방임”이라 함은 보호자가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

(이하 “아동학대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보호하며 학대 및 방임의 위기에 처한 아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등에 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운영
 2. 아동학대등의 실태 조사
 3. 아동학대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아동학대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등의 예방과 방지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제6조(아동학대예방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학대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초·중·고등학교의 장
 3. 그 밖에 공공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

- 제7조(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등을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아동학대등의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등을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등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법」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 및 그 종사자
7. 「모·부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장 및 그 종사자 또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여성폭력긴급전화의 장 및 그 상담원, 같은 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장 및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9.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11.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12. 「유아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그 종사자
13.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아동학대등의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응급조치의무 등) ①아동학대등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을 행한 자(이하 “아동학대등행위자”라 한다)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아동학대등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등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사법경찰관리의 동행 및 동석 요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등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기관 내에서의 조사시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및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동학대등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5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아동의 의료지원)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피해아동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15조(면회의 제한) 피해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학대 및 방임한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해아동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그 보호자에 대하여 피해아동과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친권 제한 및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여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제출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등의 사건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등행위자와 피해아동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게 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아동학대등행위자에 대한 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그 교육 및 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3 장 아동학대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20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제5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죄(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아동학대범죄 또는 이와 관련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시 피해아동의 증인 채택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경우 아동의 정서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피

고인 또는 아동학대등행위자와 격리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 및 그의 법정대리인·형제자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조사·심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제2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기능)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동학대등의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2. 아동학대등의 예방 관련 조사 및 연구
3. 아동학대등의 예방사업 평가
4. 아동학대등에 관한 전산시스템 운영
5. 해외 아동학대등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
6. 그 밖에 아동학대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동학대등 긴급전화 운영
2. 피해아동, 아동학대등행위자, 아동학대등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이나 관계인에 대한 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 및 치료 의뢰

4. 피해아동, 아동학대등행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연계
 5. 아동학대등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24조(비용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비용의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4조제2항 또는 제22조제2항제3호의 피해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피해아동 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별 칙

제27조(벌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조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30조(미수범) 제27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23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
- 제3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 중 “第10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 同條第2項의 保護措置 또는 第25條第1號의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 및 治療”를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보호조치”로 한다.

제38조 중 “兒童福祉事業 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포함하여”를 “아동복지사업”으로 한다.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第40條 또는 第41條 ”를 “제41조”로 한다.

②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를 위반한 죄

③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 및 제30조의 죄

④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41조,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9조”로 한다.

⑤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아동안전특별법안

• 제안이유

최근 아동의 안전사고가 급증, 많은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아동 안전과 관련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또한 현행 아동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아동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비아동인지적 법 상황 지속되고 있음. 아동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없는 현실에서 이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안전 담당 부서가 총괄시스템 구성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은 법과 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이후 국가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은 아동임.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아동 안전' 문제가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의 아동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 국무총리 산하의 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함(안 제7조 및 제8조).
- 나. 선진국 수준의 아동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동안전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다. 아동안전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기금 설치 및 재원을 확보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아동안전특별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종합적인 아동안전 정책의 수립과 체

계적인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다.
2. 제1항의 정의에 의한 아동은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나눈다.
3. “영아”라 함은 만3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말한다.
4. “유아”라 함은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말한다.
5. “어린이”이라 함은 만7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만14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7.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8. “보호자”라 함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즉, 가정에서는 부모,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는 교사를 말한다.
9.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함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보육 및 교육시설, 학원, 놀이터 등을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아동의 이용이 명백한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아동보호 및 안전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총 관

제4조(국가의 책임) 국가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아동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구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자의 의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는 보호아동의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 ①아동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아동안전보호정책방향의 설정
3.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안전정책의 평가
5. 아동안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아동안전대책위원회) ①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아동안전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안전기본계획의 시행계획
2. 중·장기 아동안전보호정책방향의 설정
3.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4. 아동안전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아동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아동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 환경개선, 규제 등을 포함하는 아동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아동안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인 추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안전시행계획)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환경개선, 규제 등에 대한 아동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안전에 관하여 해당 연도에 지정행정기관이 행하여야 할 사항
2. 해당 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시책에 관한 계획 작성의 기준이 되는

사항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즉시 이를 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안전세부시행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의하여 아동안전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어서의 아동안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인 추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과 기타 관계인에게 그 소관 업무의 범위 안에서 아동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어서의 아동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 3 장 안전교육

제13조(아동안전교육 등) 정부는 아동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안전사상의 제고를 위하여 보육 및 교육기관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과 시간동안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환경개선

제14조(환경의 정비) ①정부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각종 안전시설의 정비, 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건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특히 아동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은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나 용품은 관련 시설물과 용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5 장 아동안전지원센터

제15조(아동안전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처리와 통계정보수집을 위한 아동안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건소, 아동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아동안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센터에는 아동안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센터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안전지원센터의 업무) 아동안전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안전사고 통계시스템 구축
2. 아동안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3.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4. 아동 안전사고의 신고접수 및 처리
5. 아동안전 위해요소의 신고접수 및 처리
6. 아동안전을 위한 상담
7. 그 밖의 아동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아동안전사고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안전사고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안전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안전사고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안전기금

제18조(기금의 설치)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아동시설의 안전장치의 설치지원
2. 아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 아동안전단체의 활동지원
4. 아동 긴급구조 활동지원
5. 그 밖에 아동안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05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633건이며, 학대로 인한 사망건수도 21건이나 되는 등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않고 있음. 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음.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긴급전화의 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일부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항이 있지만, 학대아동보호사업 실시, 아동학대업무의 절차 및 각종서비스의 제공의무, 피해아동 정서발달을 위한 보조인 선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등 사후조치 서비스에 대한 세부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사후조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함(안 제23조).

-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2)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함.
- (3) 전문 의료인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따라 아동학대자와 그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 등을 실시함.
-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조요청을 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도록 의무화함.

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보호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4조).

- (1) 국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함.
-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25조).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포함시킴(안 제26조).

마.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 및 보호를 위해 법원 심리과정에서 보조인의 선임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함(안 제28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2.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그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 의료인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협조·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시·도)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시·군·구)을 둔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②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제공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3.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관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시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제2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청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2005년 6월 28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지원기본법안이 6월 30일, 2006년 2월 13일 이재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4일, 2006년 2월 23일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2006년 3월 2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가족기본법안이 3월 3일, 2006년 4월 11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2일, 2006년 4월 27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8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나. 여성가족위원회는 2006년 4월 18일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06년 9월 18일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6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다. 2006년 9월 21일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공동체의 형성·발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자 이에 합당하게 법률명을 변경하고 법률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가정생활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가족 및 사회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등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가족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민법」 제5장제1절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을 말한다)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함(안 제3조제1호).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족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의 가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정책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질환·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며, 아동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 내지 제22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1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를 위한 상담 제도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부부에 대하여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의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가정 내 폭력·방임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3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지원업무 수행과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가족센터를 두도록 하고, 가족센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족지원사를 두도록 함(안 제37조 내지 제39조).

•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가정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족정책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가족정책 관련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족의 형태·가치·기능 등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관계는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가정생활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가족 및 사회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나.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다.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라. 후견인(「민법」 제5장제1절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을 말한다)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2. “가정”이라 함은 1인 단독가구 또는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국제가족”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사이의 혼인(사실혼을 포함한다)·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족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①가족구성원은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사회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의 구현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의 달) 가정의 중요성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필요성을 고취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족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정책기본계획 등

제10조(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가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가족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가족정책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⑥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족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가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족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시·도 가족정책위원회)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가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가족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족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의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시·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시·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가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족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 및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2.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지원
3. 가족단위 복지증진

4. 안전한 가정생활 보장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위기가족 지원
8.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가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가족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교육의 실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생활실태, 가족 관련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이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와 별도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가족구성원의 권익 및 가정생활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족정책 기본시책

제20조(직장과 가정의 양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가족부양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장애 등으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장애 등으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간호휴가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있어 가족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신·출산·양육의 권리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태아검진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아검진 휴가, 유·사산 휴가 및 산·전후 휴가 등 일하는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양육과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이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가족구성원의 건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건강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가족단위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복지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한 가정생활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해환경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 내 폭력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정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및 반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전업주부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적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업주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가족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향유할 수 있는 가족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족문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문화
2. 평등한 가족문화
3.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문화
4. 합리적인 생활문화 및 소비문화
5. 다양한 국제가족 문화

제31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노동,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조사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를 위한 상담 제도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부부에 대하여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위기가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의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가정 내 폭력·방임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국제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전문돌봄요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양육·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전문돌봄요원(이하 “전문돌봄요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문돌봄요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돌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전문돌봄요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전문돌봄요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가족센터의 설치 등

제36조(가족정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가족정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가족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지원업무 수행과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시·군·구에 각각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가족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가족센터의 업무) ①중앙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정책 관련 서비스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2. 가족센터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3.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4. 시·도 가족센터에 대한 지원
5. 가족센터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가족센터 종사자 자격 관리
6. 효과적인 가족지원사업을 위한 대외협력,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시·도 가족센터는 시·도 단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정책 관련 지역서비스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2. 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시·군·구 가족센터에 대한 지원
5. 가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시·군·구 가족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 상담·교육 및 문화 사업

2. 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가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전문돌봄요원의 교육·파견·관리 등
5. 그 밖에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39조(가족지원사) ①가족센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하 “가족지원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가족지원사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지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4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센터가 아니면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가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가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가족센터로 본다.

제3조(건강가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강가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족지원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가족정책기본법」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강가정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아동양육에 관한 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06년 12월 일 인쇄

2006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TEL (02)2100-6782
FAX (02)2100-6668
<http://www.mogef.go.kr>

인쇄 : 중앙기획·인쇄
TEL (02)736-2866~7
FAX (02)739-824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 11-1060110-000158-01